

201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시행계획, 2019. 5.

방송통신위원회 의안·정책관리팀 (02-2110-1457)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511호

목 차

I .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3
2.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8
II.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7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19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22
III. 세부 추진계획	27
전략목표 I	29
전략목표 II	62
전략목표 III	106
전략목표 IV	146
IV. 환류 등 관련계획	175
1. 이행상황 점검	177
2. 평가결과 환류체계	179
3. 변화관리 계획	183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188
【붙임】	
1-1. 성과지표 현황	193
1-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 · 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200



I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2.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 

1. 그간의 정책성과

□ 방송의 공적 책임·공공성 제고

- 사회적 논의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및 편성·제작 자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견서를 국회 제출하였습니다.
- 또한, 엄정한 방송사 재허가 심사와 이행점검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 재난방송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 2018년 1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신속·정확한 재난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긴급재난(지진규모 5.0이상 및 민방위 경보) 발생 시에는 방송사에서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하여 긴급한 재난상황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방송통신 해외진출 지원 및 남북 교류 추진

-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교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선진 방송통신 정책경험을 공유하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프랑스 ARCEP 위원장 양자면담



미국 FCC 위원장 양자면담



영국 OFCOM 위원장 양자면담



□ 방송통신분야 공정경쟁환경 조성

- 위원회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편PP 간 비대칭 규제 개선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지상파 방송과의 규제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종편PP의 분담금 징수율을 전년도 방송광고 매출액을 상향 조정(1.0%→1.5%)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에 관한 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18.9월)
-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인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제1차 전체회의



□ 전 국민 미디어 역량 증진 및 참여 기회 확대

- 시청자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고 미디어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 및 전국 7개 지역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2005년)에 이어 광주(2007년), 강원·대전·인천(2014년), 서울(2015년), 울산(2016년)에 시청자미디어 센터를 개관하였습니다.
- 지능정보사회 핵심역량을 갖춘 미디어 창의인재 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201 → 230개교), 동아리미디어교육(68 → 70개교), 대학생 대상 학점인정 교육과정(30 → 33개교) 등 학교미디어교육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17년 299개교 → ‘18년 333개교)
 - 특히 1인 미디어, VR(Virtual Reality), 드론 등을 활용한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학교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적성을 조기 발굴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현황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122개교	201개교	230개교
동아리 미디어교육	54개교	68개교	70개교
대학연계과정	25개교	30개교	33개교

□ 외주제작 상생환경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이하 ‘외주제작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독립창작자 인권선언 선포 및 편성고시·평가규칙 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17년 12월에 5개 부처(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합동 마련

- 특히, 「상생 방송제작을 위한 독립창작자 인권선언문」을 최종 선포 (‘18.11월)하였으며, 이 인권선언문에는 독립창작자의 기본인권 보장,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폭력예방 및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 안전한 통신·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 위원회는 웹하드상에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유통하여 부당 이익을 얻고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및 집중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총154,215건)
- 또한, 집중적인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등으로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유통이 약 97% 감소(2018년 7월 3,092건 → 2018년 12월 90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웹하드 불법영상을 삭제 통계(2018년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음란물	14,182	12,105	11,901	11,507	15,817	9,302	9,216	9,321	10,956	11,263	11,988	12,263
성범죄물	595	345	656	1,019	1,688	2,086	3,092	2,047	2,106	419	251	90

- 특히, 2018년 5월 29일부터 9월 5일(100일)까지 웹하드 상 디지털 성범죄영상물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8,310건을 삭제하고 상습 유포자(333개 ID)를 경찰청에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이용자 피해·불편사항 적극 발굴·개선

- 이용자가 유선 결합상품에 대해 명백한 해지 의사를 이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제한하는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이용자 선택권 강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향후, 원스톱 전환시스템(Oonestop Switch-System)이 구축되면 초고속 인터넷 또는 초고속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은 복잡한 절차 없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사업자 전환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 위원회는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를 개최(‘18.3.12)하여 인터넷 개인방송 아이템 결제 한도 조정, 음란물 유통관련 법·제도 정비 등 인터넷 개인방송 역기능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특히,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 아이템 과다 결제 피해에 대한 대책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참석자 중 일부 사업자는 1일 결제 한도를 100만원 이하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2. 2019년도 정책 추진방향

①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강화로 국민의 신뢰 제고

□ 방송의 역할 재정립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를 합리화하고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여 국민추천이사제, 사장 선임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등이 반영되도록 방송 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체납 가산금을 인하(5→3%)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 유공자에 대한 면제절차를 간소화하며 선납 할인 고지 의무화를 시행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수신료 산정과 수신료와 다른 수익의 회계분리 등 방송법 개정을 지원하겠습니다.

□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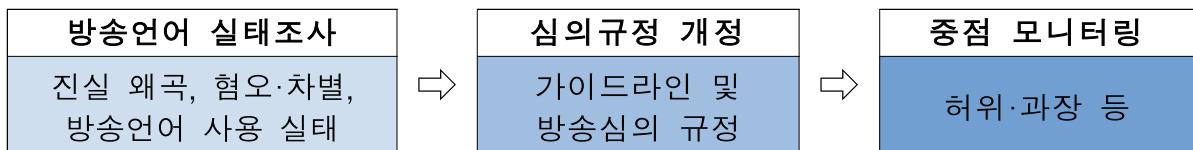
- 지상파 재허가 시 방송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경영전략과 공적책임 이행실적 등 중점 심사, 지상파·종편·보도채널 재허가·재승인 시 부가한 공정성 확보, 콘텐츠 투자 조건 등 철저히 점검 하겠습니다.
- 방송의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송관계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방송사측·종사자측 동수의 편성위원회 의무화, 편성·제작의 자율성 보장 등 기능 강화 및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하겠습니다.
- 방송평가 시 방송심의규정 위반 및 오보 관련 확정판결 등 반영 확대, 종편PP의 프로그램 질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

- 재난·재해에 대비하여 재난방송이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수신 음영지역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 우수한 기술력과 발전가능성은 있으나, 자금과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 지원(총 72개사)을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언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관계자 교육 및 우수프로그램 시상 등을 통해 자율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 방송프로그램 품격 제고를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



자율규제 강화 (심의 책임자 회의, 방송관계자 교육, 방송언어 캠페인, 우수프로그램 시상 등)

- 지역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전문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SNS 및 인터넷 포털용 신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②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확대 및 이용자 권익 증진

□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

- 지역방송이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전문 인력 교육을 강화하고, SNS 및 인터넷 포털용 신기술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특히, 어린이·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미디어 활용능력을 강화하고 미디어 창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 지역 간 차별 없는 미디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 충북, 세종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고, 농어촌 등 원거리지역을 위한 ‘미디어 나눔버스’를 확대 운영(‘18년 2대→‘19년 4대)하겠습니다.

※ ’18년 7개 → ’19년 10개 → 전국 17개 광역권 구축

- 방송은 물론 통신·인터넷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미디어 교육체계 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주민들이 직접 미디어를 운영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마을 미디어교육을 확대(‘18년 50개 → ’19년 70개 마을)하고,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구성(3월)하겠습니다.
- 방송에 국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점진적 확대를 유도하겠습니다.

<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편성 확대 >

2017년	2018년	2019년 목표
88개 방송사	92개 방송사	94개 방송사

*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프로그램으로 KBS·공동체라디오는 의무적으로 편성·방송

□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음성안내·자막 기능 등이 내장된 맞춤형 TV를 우선 보급('19년 15,000대)하고, 방송사의 장애인용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장애학생, 발달장애인 등 시청 대상별 전용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겠습니다.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맞춤형 TV 누적 보급률 : '19년 80%, '21년 100% 달성

□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 지능정보사회에 맞는 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권리 강화 등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 마련 및 통신사업자의 장애 사실 고지 의무화(시행령 개정, 6월)를 추진하겠습니다.
- 통신 관련 분쟁을 보다 신속·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시행(6월~)하겠습니다.

※ 통신분쟁은 1인의 피해금액이 소액으로 재정제도(90일)에 비해 처리기한 단축(60일)

-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6월)하고,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제도('20년 시행) 및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위치법 개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③ 방송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

- 외주거래수익의 합리적 배분, 계약 절차 공정성 제고 등이 포함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시행(4분기), 외주제작비 현실화(재허가조건) 이행 점검 실시, 제작 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등 방송현장의 안전 강화조치를 유도(방송평가 적용)하겠습니다.
- 5G 상용화, 플랫폼사업자 영향력 확대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체계를 정비(2월~)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플랫폼 시장과 단말기유통·방송 분야에서의 각종 부당 거래행위를 중점 점검 및 제재하겠습니다.
 - (플랫폼 분야) 앱마켓의 중소 앱개발사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 미디어 콘텐츠플랫폼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
 - (단말기유통 분야) 유통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강요, 온라인 불법판매 유도행위 등
 - (홈쇼핑 분야) 유료방송사의 채널 번호 부당 변경, 홈쇼핑사의 납품업체 편성 취소 등
 - (방송광고 분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와 중소지상파 간 부당한 계약조건 강요 등

□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

-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 신설(법 개정안 마련, 6월)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9월)하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의 역외규정* 시행('19.6월)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서비스 제공 시 금지행위 점검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확대**하겠습니다.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국내법을 적용

** '18년 앱마켓사업자 최초 평가, '19년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사업자까지 확대

□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 종편PP의 매출 및 시청률 증가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비대칭 규제를 개선하고 규제합리성 제고를 위해 종편PP를 유료방송 의무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IPTV 사업자의 금지행위 자료제출의무를 방송법 수준으로 개선하여 유료방송사(IPTV, SO) 간 비대칭규제를 해소(개정안 마련, 4월)하겠습니다.

④ 고품질 한류 방송콘텐츠의 제작·유통 기반 확충

□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

-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와 방송광고시장 침체 등에 대응하여 광고 제도 개선으로 콘텐츠 제작재원 확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매체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시청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협찬의 투명성 제고와 시청권 보호 등을 위해 협찬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허용범위 및 세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협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ASEAN 10개국 중 시장규모 및 한류 파급 정도가 큰 주요3국(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과 우선 협정체결을 하고, 터키·러시아 등과 신규 추진하겠습니다.

- 국내외 사업자 간 실질적 매칭 기회를 제공하고, 한류 방송 콘텐츠의 홍보 및 판로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신규서비스 활성화 지원 및 제도 정비

- OTT 서비스의 영향력 확대 및 글로벌 사업자 본격 진입에 대응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OTT 서비스에 최소한의 규제를 적용하는 방송관계법 개정안 국회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 의원발의 : 방송법·IPTV법 개정안(18.10월 번재일), 방송법 개정안(19.1월 김성수)

- '15년 수립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을 대내외 환경변화와 기술 여건을 고려하여 정비하고, 'UHD 추진 점검 TF'를 구성·운영하여 UHD 전환시기 및 편성비율 현실화 방안 등을 재허가에 반영하겠습니다.

□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

- 미디어 기업 간 자발적 인수·합병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공성·지역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심사하고, 인수·합병 과정에서 콘텐츠 투자 촉진을 유도하겠습니다.
- 방송통신 공공 데이터를 기업·연구기관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국내외 시청자의 인터넷 반응정보를 수집하여 콘텐츠가치를 분석·공개함으로써 한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⑤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인터넷의 역기능 대응 강화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

- 인터넷 상 임시조치 관련 정보게시자의 반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인터넷상 비판 기능 활성화 및 법률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형법(제310조)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음

□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

- 디지털 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24시간 이내)를 위한 심의 절차 개선 추진(방통위설치법 개정, 12월)하고, 불법유해정보 주요 공급망*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 ① 웹사이트 및 SNS 운영자·광고업자 ② 웹하드·헤비업로더 ③ 음란 인터넷방송업자
-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유착관계 근절을 위해 주식·지분 소유를 금지하고, 성능평가를 통과한 필터링 기술만 적용도록 등록요건 강화 및 기술적조치 미이행 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겠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의 음란·욕설, 과다결제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소년보호 의무 및 유료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전담 모니터링 신설 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 금년부터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전담 요원을 확보하여 모니터링 실시

□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사이버 안심존' 앱 보급(1,100개교→1,500개교), 사이버 언어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스마트안심드림' 앱 보급(42,000명 → 47,000명)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국민이 인터넷 역기능에 경각심을 느끼고 자정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홍보와 참여형 캠페인을 강화하고, 인터넷 윤리 캠페인·공모전* 등 개최 및 인터넷윤리체험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름다운인터넷세상 선포식(3월), 인터넷드림 창작음악제(9월), 인터넷윤리대전(12월), 언론공동캠페인(연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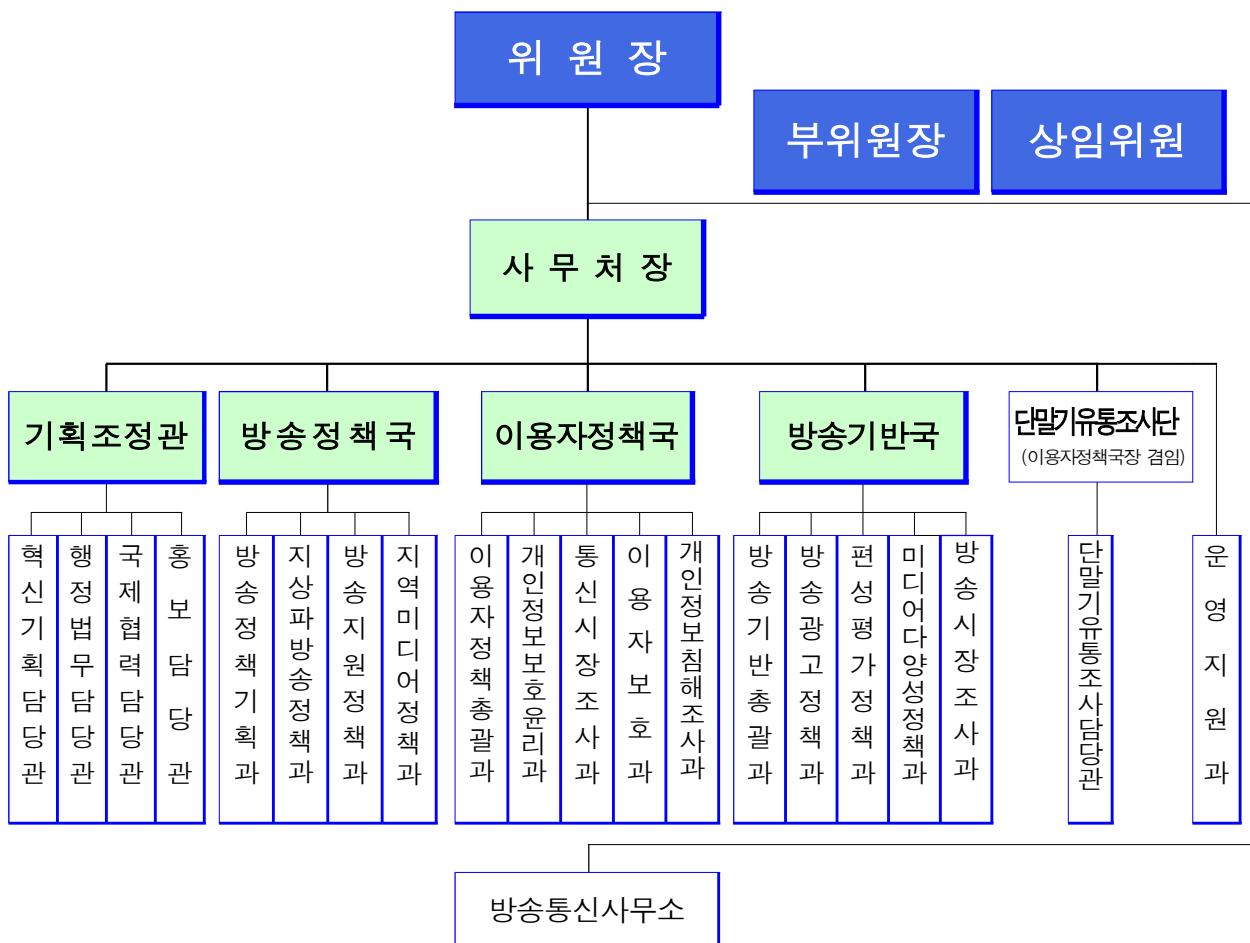
II

일반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2.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개요

1. 방송통신위원회 일반현황

(1) 조직 : 1처 3국 1관 20과(담당관) / 1소속기관



(2) 정원 : 276명

구 분	정무직	고위 공무원단	3 · 4급	4급	4 · 5급	5급	6급 이하	계
본부	5	5	5	16	17	73	114	235
소속기관				1		5	35	41
계	5	5	5	17	17	78	149	276

(3) 소관 법률

분야	법률명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일부)○ 방송법 (일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파법 (일부)

(4)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8	'19	'20	'21	'22
□ 재정사업 합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2,378 (8.5)	2,579 (17.2)	3,023 (1.9)	3,080 (2.3)	3,151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2,378 (8.5)	2,579 (17.2)	3,023 (1.9)	3,080 (2.3)	3,151
□ 총지출 구분					
○ 인건비 (전년대비증가율, %)	191 (34.0)	255 (7.0)	274 (6.9)	292 (6.8)	313
○ 기본경비 (전년대비증가율, %)	37 (8.1)	40 (10.0)	44 (2.3)	45 (4.4)	47
○ 주요사업비 (전년대비증가율, %)	2,150 (6.2)	2,284 (18.4)	2,705 (1.4)	2,743 (1.7)	2,791
□ 예산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556 (12.9)	627 (30.9)	822 (1.3)	832 (2.4)	853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556 (12.9)	627 (30.9)	822 (1.3)	832 (2.4)	853
【일반회계】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556 (12.9)	627 (30.9)	822 (1.3)	832 (2.4)	853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556 (12.9)	627 (30.9)	822 (1.3)	832 (2.4)	853
□ 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822 (7.1)	1,952 (12.8)	2,201 (2.1)	2,248 (2.2)	2,298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822 (7.1)	1,952 (12.8)	2,201 (2.1)	2,248 (2.2)	2,298
【방송통신발전기금】					
○ (총)지출 (전년대비증가율, %)	1,822 (7.1)	1,952 (12.8)	2,201 (2.1)	2,248 (2.2)	2,298
○ 총계 (전년대비증가율, %)	1,822 (7.1)	1,952 (12.8)	2,201 (2.1)	2,248 (2.2)	2,298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 방송사 재허가시 공적책임 중점 심사 및 방송 공정성 평가 강화, 수신료 감면제도 개선, 재난방송 강화, 공익광고 편성 확대 등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 방송통신미디어가 생활의 필수매체가 된 환경 속에서 국민 누구나 미디어에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미디어센터 및 미디어 나눔 버스 확충, 마을미디어교육 확대,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등으로 미디어 주권 향상
-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사업자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통신재난 시 장애사실 고지 의무화 추진 등 이용자의 피해구제 강화
-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시행 및 외주제작비 현실화 이행점검, 제작현장 안전강화 조치 유도 등 창작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외주 제작 환경 조성
- 주요 해외사업자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망이용료 차별 해소 및 개인정보 유출 등 해외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임시 중지 명령제도 도입 등 역차별 해소
- 디지털성범죄영상물의 신속한 심의(24시간 이내),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간 주식·지분 소유 금지 등 카르텔 근절,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유도 등 추진

(2) 201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목표체계

임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한다.



비전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전
략
목
표

및
성
과
목
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 ①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한다.
-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 ②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 ①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
증진에 기여한다.
-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익강화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 ②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
하고 미디어복지를 제고한다.

- ①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 ②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 ①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 원활한 정책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 일 잘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 ②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지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8	10	26	37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한다.		
	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정 4-1, 4-2 업무 1-1, 1-2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국정 70-1 업무 2-1, 2-2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국정 70-2 업무 1-3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국정 70-1 업무 1-3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국정 4-1, 4-2 업무 1-2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국정 4-1, 4-2 업무 1-2
II .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리증진에 기여한다.		
	①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리강화	국정 33-9 업무 2-4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국정 31-6 업무 3-1
	③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국정 31-6 업무 3-1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국정 33-9 업무 2-4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국정 33-9 업무 3-2
	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국정 33-9 업무 3-2
	③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국정 70-5 업무 5-2, 5-3
	④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국정 4-3, 70-5 업무 4-4, 5-1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업무 1-3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국정 70-1 업무 2-3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국정 70-4 업무 3-1, 3-3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국정 70-4 업무 4-1, 4-2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업무 1-3
	③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업무 4-4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	
	④ 일 잘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업무 1-3

III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I

전략목표 II

전략목표 III

전략목표 IV

전략목표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기 본 방 향**◇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매체간 경쟁심화로 정치·산업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공영방송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한편, 환경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방송규제체계 정립 필요성 제기
-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 제작·비판적 이해 및 활용 능력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세대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확대가 필요
- 신규 매체 등장 등 급변하는 방송환경에서 위상과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구축 마련 필요
-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예방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할 필요
- 매체간 경쟁 심화로 방송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 및 시청자의 권리 증진 필요
 -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이행 담보를 위해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조건 이행점검과 관련 제도개선 필요

◇ 그간의 성과

-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편성 및 재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방송제작 장비와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고 생애주기별·계층별 미디어 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시청자 참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
 -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유통 지원, 교육 및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해외 피칭포럼 최우수 기획상 수상(Tokyo Docs, 11월), 시청자 만족도 향상('17년 86.1점→'18년 86.4점) 및 국내외 판매 수익 증가('17년 7.07억→'18년 8.25억) 창출
 -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실시, 재난방송 관련 고시 및 매뉴얼 개정, 터널·지하공간의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컨설팅 실시 등을 완료하여 방송재난 및 재난방송 강화 방안 마련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여부를 엄정히 심사하고, 관련 조건 부가를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
- ※ '17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시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등을 위한 엄격한 조건을 부가하여 방심위 법정제재 감소('16년 22개 → '17년 재승인 후 0개),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률 향상('16년 78.1% → '17년 101.4%)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중점 추진내용

-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편성 및 재원제도 관련 방송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방송 규제체계 정비방안 마련
- 미디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등 학교 미디어교육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와 마을 미디어교육을 강화하여 지역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지원

- 유통 가능성이 높은 우수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 국내외 콘텐츠 마켓 및 피칭 포럼 참가를 통한 유통 인프라 발굴, 인적자원 교육 강화로 자체 지역·중소방송의 제작역량 강화 추진
-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개선함으로써 중단 없는 재난방송 실시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에 따른 매체별 중점심사 사항을 엄정히 심사하고 심사시 부가한 조건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이행실적 관련 기준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전략목표와 임무 간의 상관성

- 지배구조 및 편성·재원제도 개선으로 공영방송의 민주적인 여론수렴 기능을 증진하고, 중장기 규제체계 개선으로 균형잡힌 미디어 발전 도모
- 보편적 미디어교육을 통하여 전 국민의 미디어 역량을 제고하고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함으로써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
- 지역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중소방송 활성화 기반 조성 구축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
- 방송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히 수습·복구함으로써 재난방송을 원활하게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 방송사업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이행 실적 점검,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공공성 강화 및 시청자 권리 증진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의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추진율
I-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② 부산·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③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이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 점검률
I-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종편·보도PP의 공적 책무 제고율

전략목표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주요내용

□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신장

- 공영방송 지배구조·편성·재원 제도 개선과 중장기 방송규제 체계 정비, 방송사업자에 대한 엄격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이행점검 등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지역·중소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전 국민 대상 보편적 미디어교육 강화 등을 통해 균형 잡힌 미디어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8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9	'20	'21	'22	'23			
방송의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추진율(%)	신규	100	100	100	100	100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도모를 위한 주요 지표의 목표달성을 측정	<p>① + ② + ③</p> <p>①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 추진율 목표 달성을 × 0.2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3회 × 0.1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1)</p> <p>② 지역·중소방송사 자체 제작 비용 투자비율 목표 달성을 × 0.4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사 자체제작비 /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총 제작비) ※ '19년 목표 : 30%</p> <p>③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횟수 목표 달성을 × 0.4 ※ '19년 목표 : 130회</p>	개별 지표 실적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따라 미디어 생태계 내 새로운 가치와 시장질서가 요구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여 규제체계 개선 필요
- 미디어 환경 변화와 매체간 경쟁 심화에 따라 방송권역의 제한을 받는 지역방송사의 경쟁력 약화로 인한 공적기능 훼손 우려
- 시청자미디어센터가 7개 광역권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간 미디어교육 서비스의 편중 발생

□ 갈등요인

- 기존 방송사업자와 OTT 등 신유형 서비스 사업자 간 갈등과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가능
-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작 투자 확대 등이 필요 하나 사업자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신규 구축을 추진중이나, 건축물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갈등 관리계획

-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인 방송 규제 개선방향을 제시
- 해외 유통 및 뉴미디어 교육 지원 등 지역방송에 대한 예산·정책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
- 해당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19년에 지역 시청자 미디어센터 3개소(경기·세종·충북)의 신규 구축을 완료하고, 추가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협의 노력 지속

성과목표 |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한다.

(1) 주요 내용

- 지배구조 및 편성·재원제도 개선으로 공영방송이 국민에게 공정하고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방송 규제체계 개선방안 마련
- 시청자 방송참여와 권리증진을 위하여 전 국민 대상 프로그램 제작 교육, 시설·장비를 활용한 제작 실습,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 제고 등 단계별 미디어교육 실시
- 지역·중소방송이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역민에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기반을 조성
-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신규	100	방송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청자 권리 증진을 위한 주요 과제의 목표달성을 결과 측정	① + ② ①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개선 추진을 목표 달성을 × 0.5 (법률·회계 자문 2회 × 0.1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회 × 0.1 + 방송법 개정안 의원발의 지원 × 0.1 + 방송법 시행령 개정 × 0.2) ②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 달성을 × 0.5 ※ '19년 목표 : 200개	개별 지표 실적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정치·산업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청정방송에 대한 국민 염원이 크나 수신료 납부거부 등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는 아직 부족
 -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안정적 재원에 기반하여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는 크나, 세부 개선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 지연
-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가 '18년 57만6천명에 이르고 있으나 전국 7개 광역권에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미디어 교육 서비스의 편중 발생
- 모바일을 통한 동영상 시청 등 시청자 시청행태의 변화에 따라 방송권역의 제한을 받는 지역 지상파방송의 위상과 기능은 약화
 - 종합편성PP의 성장 등 채널의 다양화로 방송매체별 경쟁이 심화되어 지역방송의 방송시장 점유율 및 광고매출 지속적 하락
 - 인원 감축 및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지역방송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방송의 공적기능이 훼손될 우려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재난방송 관리체계가 미흡

□ 갈등요인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등 지배구조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정치·산업적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개진
- * 공영방송 이사추천 주체(국회/행정부 등) 및 여·야 배분비율, 사장추천위원회 및 특별다수제 도입 여부, 편성위원회 구성 방식 및 기능 등 관련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추가 구축 관련, 센터 건축물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마련하고 운영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6:4로 분담하고 있어 지자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역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작 투자 확대 등이 필요 하나 사업자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
 - 고용인력, 제작비 투자 감축 등으로 콘텐츠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역방송의 수익성 악화가 심화되는 등 악순환
 - 지역 지상파사는 존립 기반 구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기대 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 존재
- 재난방송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14.6월 개정되었으나 투자에 소극적
 - 시설 관리 주체의 관심부족으로 자체적 예산확보가 미흡하고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나, 정부의 예산상 지원에는 한계가 있어 터널이나 지하공간에 재난방송 수신 불량률이 높음

□ 갈등관리계획

- '18년 사회적 논의기구인 '방송미래발전위원회' 운영으로 공영방송 등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시했으므로,
 - 관련 법적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회 설명 등으로 해당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국회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할 예정

- '19년에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 3개소(경기·세종·충북)의 신규 구축을 완료하고, 센터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조
- 지역방송에 대한 예산 및 정책 지원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중소방송사의 경쟁력 제고 및 자립기반 조성
 - 해외 유통 및 뉴미디어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역방송사의 광고 이외 수익 창출 다각화를 도모하여 발전기반 조성
- 신속·정확한 재난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I-1-①)

□ 추진배경(목적)

- 매체 간 경쟁심화로 정치·산업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청정방송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신뢰는 아직 부족*

* 공영방송의 공정성, 공익성 관련 문제제기의 일환으로 '18년부터 주재원인 수신료 납부거부 운동 등 촉발

- 공영방송이 공정·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안정적 재원에 기반하여 양질의 공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
- '16년부터 국회 등에 관련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임에 따라 여·야·정은 법 개정을 위해 본격 논의하기로 합의

※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및 국회 과기정위 법안소위 등은 관련 방송관계법 개정을 신속하게 논의하기로 합의('18.11~'19.1)

- 미디어 환경의 급변에 따라 미디어 생태계 내 새로운 가치와 시장 질서가 요구되고 있으며, 방송 독점화, 공적책무 등 전통적 규제의 논거가 약해짐에 따라 사업자간 권리와 의무를 두고 갈등
-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 방송 규제 개선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
- 추진근거
- 방송법 제4조(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5조(방송의 공적책임),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44조(공사의 공적책임), 제56조(재원)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 자율성 제고)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를 합리화하고 제작·편성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지배구조 및 편성제도 마련

- 국민추천이사제, 사장 선임시 국민 의견수렴 절차 의무화, 노사 공동 편성위 설치 의무화 등 방통위 입장*(18.12월 국회제출)이 방송관계법에 반영되도록 지원
- 법률자문회의 개최를 통한 법적검토와 방송산업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 세부 제도개선 사항을 국회 상임위 등 설명 추진

< * 방통위 입장 주요내용 >

- (이사회 구성) 현행대로 방통위가 추천(선임)하되, 공영방송이 정치적 영향에 좌우되지 않도록 이사 정원의 1/3(또는 일정 수) 이상을 **국민추천이사***로 구성
 - * 후보자는 미디어·법률·회계 등 단체 추천을 받거나 공모하되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방통위 위원 전원 합의로 선임
- (사장 선임) 이사회 선임이 개선되면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여부는 이사회가 정하되, 사장 선임 시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
 - 특별다수제 도입은 이사회가 정하되, 도입 시 의사결정의 지연을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경과 후 과반수제로 전환
- (편성위원회 설치) 지상파 및 종편·보도PP에 사업자 및 종사자 대표 동수로 편성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쟁 발생 시 중재기구 설치를 **의무화**

②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개선) '72년 이후 변함없는 수신료 제도를 환경변화에 맞게 국민 불편을 감소할 수 있도록 개선

- 공영방송이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여 수신료와 비수신료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수신료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의원발의법안 국회제출 지원)

- 수신료에 부과되는 체납 가산금을 다른 부담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인하(5%→3%)하고 국가 유공자 등의 면제절차를 간소화 하며, KBS가 수신료 선납 할인제도를 국민이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방송법 시행령 개정)

③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송제도개선 추진반(가칭)'을 구성·운영(3월~)

-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는 강화하되, 민영방송은 활력 있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미래 방송통신 제도개선 방안 마련

※ 관계부처(과기정통부), 정책연구기관, 방송·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공민영 방송 규제체계와 방통융합 제도개선 등 논의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연중	공영방송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설명	1~12월	
1/4분기	공영방송 수신료 등 회계방식 개선 방송법 개정안 국회제출 지원	2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3월	
2/4분기	공영방송 수신료 감면제도 등 개선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4월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를 위한 '방송제도개선 추진반' 구성·운영	4~12월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 관련 학계 의견수렴	6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 개최	6월	
3/4분기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 관련 전문가·시민단체 의견수렴	8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제도개선 등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9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수신료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회의 개최	9월	
4/4분기	중장기 방송규제 개선방안(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11월	
	중장기 방송규제 개선방안 마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자) 공영방송이 지배구조 및 재원제도 개선 등으로 공정성·독립성 제고 시 시청자에 양질의 공적서비스 제공 가능
- (방송 종사자)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종사자의 제작·편성 자율성이 제고되면 방송사 내부 종사자가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이 개선
- (방송사업자) 규제정책의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제고

○ 이해관계집단

- (방송사 사측 및 종사자)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보장 관련, 경영 및 인사권을 보유하고자 하는 사측과,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종사자측 이해 대립
- (기존 방송사업자 및 OTT사업자) 기존 방송사업자와 신유형 융합서비스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 기대효과

-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 민주적 여론수렴 기능을 향상하고 재원제도 개선으로 국민 부담을 경감
- 중장기 방송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디어 환경변화 대응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관련법제 개선의 기반 마련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	-	-	90	<p>관련 방송관계법 개정에 대한 여야 및 사업자·종사자간 이견대립 등 외생변수가 많고 신규 지표인 점을 감안하여 '19년 목표치를 90%로 설정</p> <p>① + ② + ③</p> <p>①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 개선 추진율 0.3 (국회 등에 관련 방송관계법령 개정방향 상임위원회 설명 3회 × 0.1 + 법률 자문 2회 × 0.05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회 × 0.05 + 방송관계법 개정 × 0.1)</p> <p>②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율 0.3 (법률·회계 자문 2회 × 0.05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회 × 0.05 + 방송법 개정안 의원발의 지원 × 0.1 + 방송법 시행령 개정 × 0.1)</p> <p>③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 추진율 0.4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3회 × 0.2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2)</p>	회의 개최 결과, 방송관계 법령 개정 실적,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 등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I -1-②)

□ 추진배경

-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 제작·비판적 이해 및 활용 능력은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지역·세대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위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확대가 필요
- 추진근거
 - 방송법 제90조의2(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리증진)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제작 교육,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활용한 제작 실습, 비판적 미디어 이해능력 제고 등 단계별 미디어교육 실시
- 방송제작 시설·장비가 탑재된 미디어나눔버스를 운영하여 농·산·어촌 등 원거리 거주민 또는 노인·장애인 등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교육서비스 제공
-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의 관심사를 함께 나누는 생활미디어를 직접 제작·운영할 수 있도록 마을미디어교육 추진
-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 동아리 미디어교육, 대학생 학점인정 교육 과정 등 학교미디어교육 확대
- 각 지역 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미디어교육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모전·페스티벌 등 개최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미디어교육 강사 연수프로그램 실시	2월	
	자유학기제 등 학교미디어교육 지원	3~12월	
	지역 시청자미디어센터별 특화프로그램 운영	3~12월	
2/4분기	미디어교육 단체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4~11월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 및 교육 실시	4~12월	
	마을미디어교육 컨설팅 및 교육 실시	4~12월	
3/4분기	미디어윤리교육 실시(학부모·교사 대상)	7~12월	
	지역 센터별 시청자 참여행사 개최	9~12월	
4/4분기	미디어교육 컨퍼런스 개최	11월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 (전 국민) 다양한 미디어 이해·활용 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디어 역량을 제고

○ 이해관계자

- (지역자치단체) 전국 광역권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추가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
- (타 기관 미디어센터) 타 기관 소규모미디어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등 인프라 및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시청자미디어센터의 허브 역할 강화

□ 기대효과

-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방송제작 시설·장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을 강화하여 시청자 방송참여 활성화 등 국민들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에 기여
-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분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간 미디어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마을 미디어교육을 확대하여 지역문화 창달과 마을공동체 회복에 기여
- 자유학기제 등 학교미디어교육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올바른 미디어 수용 능력을 제고하고 미디어 관련 분야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③)		
① 시청자 권리보호 및 참여 활성화(3133)		
▪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303)	방송통신 발전기금	171 (185) 171 37
- 시청자권익증진 사업		241 (257) 242 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만명)	47.1	52.9	57.6	58	최근 3개년 신규센터(인천, 대전, 강원) 연평균 증가율의 평균인 7.9%를 반영하여 58만명을 '19년 목표치 설정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합계	사업 수행결과 자료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이용자 수)
부산·광주 시청자미디어 센터 이용자수 (만명)	부산 10.6	부산 10.3	부산 10.9	부산 11.0	2014년 최고치를 달성한 후 감소추세에 접어든 부산, 광주센터 이용률을 상승추세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전년대비 1% 증가한 목표치를 설정	부산센터 이용자수, 광주센터 이용자 수	사업 수행결과 자료 (부산, 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전체 이용자 수)
시청자미디어 센터 이용자 만족도 (점)	89.5	91.3	91.8	92.0	목표 구간이 90점대로 임계치에 가깝고 만족도 조사는 주관적인 평가로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대비 0.22% 상승한 92점을 '19년 목표치로 설정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센터 이용자 설문 조사(E-mail, 전화 등)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I-1-③)

□ 추진배경(목적)

- 급변하는 방송환경 속에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지상파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 및 자립 기반 조성 필요 증대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의거하여 '제2차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 수립('17.12월)됨에 따라 지역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을 위한 지원 강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및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에 의거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책임 제고를 위한 '기금지원심사' 실시
- 지역·중소방송의 고품질 콘텐츠 제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
- 지역방송의 수익원 지속 발굴 및 자체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콘텐츠 마켓 참가를 지원하고 지역방송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제작지원 프로그램 공모·심사(기금지원심사 포함) 및 지원작 선정	2월, 3월	
	해외 피칭포럼 참가 대상 모집 및 교육	3~12월	
	지역방송사 부산콘텐츠마켓(BCM) 참가 콘텐츠 선정 및 재제작	3~6월	
2/4분기	지역방송사 부산콘텐츠마켓(BCM) 참가 지원	5월	
	지역방송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운영	4~12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3/4분기	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현장점검	7~8월	
	지역방송사 아시아텔레비전 포럼(ATF) 참가 콘텐츠 선정 및 재제작	8~12월	
4/4분기	지역방송사 해외 피칭포럼 참가	11~12월	
	지역방송사 아시아텔레비전 포럼(ATF) 참가 지원	12월	
	제작지원 프로그램 시청자만족도 조사 실시	11~12월	
연중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연6회 개최	격월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지역·중소방송 시청자) 우수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통한 시청자에게 다양한 고품질 방송서비스 제공 등 시청권 강화
- (지역·중소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유통 및 제작인력 교육을 통해 지역·중소방송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 및 수익기반 창출

○ 이해관계자

- (중앙지상파방송사) 지역·중소방송 지원 정책이 중앙지상파 방송사와 이해관계 상충 시 양측의 의견조정 및 협조 필요

□ 기대효과

-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 방송품질 향상 및 콘텐츠 경쟁력 제고 →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수익 창출 → 제작비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여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 발전기반 마련
- 지역성을 반영한 고품격 프로그램의 제작·방영을 통해 지역 시청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향상 및 지역문화 창달 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①)		
① 방송인프라 지원(3131)	방송통신 발전기금 41 (813)	41 (840)
▪ 지역·중소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308)	41	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이행률(%)	-	-	70	74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18년 ~'20년)의 추진과제인 10대 정책 과제* 중 '18년도 추진 실적(70%)을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매년 5% 확대를 목표로 설정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10대정책 과제 이행률(%)	사업 결과보고서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I-1-④)

□ 추진배경(목적)

-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예방과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안정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난발생시 재난정보를 신속·정확히 전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재난유형에 효율적 대응을 위한 방송재난 관리체계 확립 및 재난방송 강화 필요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제40조, 제40조의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5조,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고시)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으로 효율적인 방송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재난방송 실시 체계 확립
- 지진, 태풍 등 대규모 재난으로부터 사전에 방송시설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방송재난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터널, 지하 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라디오, DMB 수신 환경 조사를 통해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가능하도록 하여 재난피해 예방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 예방·대비·대응 활동 전개, 신속한 피해상황 접수 및 전파 등 위기대응체계 구축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해빙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3월	
2/4분기	'18년 3~4분기 재난방송 실시 결과 점검	4월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 개정	6월	
	하절기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점검	6월	
3/4분기	2019년도 방송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9월	
4/4분기	'19년 1~2분기 재난방송 실시 결과 점검	10월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10~11월	
	동절기 대비 중요방송시설 안전점검	11~12월	
	방송재난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11~12월	
	2019년도 터널 등 지하공간 재난방송 수신환경 실태조사 완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방송서비스 이용자 포함) : 방송서비스에 대한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전달 및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제공

○ 이해관계자

- 정부부처(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방송사업자(지상파·종편·보도PP 등) :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정보 전달과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와 방송사업자의 유기적인 협력 필요

□ 기대효과

- 종합적인 방송재난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재난방송 등 종합매뉴얼 표준안 정비를 통한 신속한 재난방송 실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 중요 방송시설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 안전점검 등을 통해 방송 재난 체계 강화 및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일반회계	13.36 (36.4)	13.96 (45.6)
▪ 방송재난관리(307)		13.36	13.96
- 방송재난관리 강화		1.7	2.5
- 방송재난관리 활동지원		0.20	0.20
-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 활동지원		0.36	0.36
- KBS 지역(총)국 재난재해 자막속보시스템 개선		6.5	4.0
- 중계시설 연구용역		4.6	6.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 점검률(%)	58.2	77.6	80	82	중요 방송시설 취약·위협 요인을 사전 발굴 개선하여 중단 없는 방송 서비스 실시를 위해 설정 [‘19년도 안전 점검 시설수/ 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수(104 개소)] × 100	내부자료

성과목표 I -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지상파 방송 재허가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관련 실적 및 이행계획을 엄정히 심사하고, 재허가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통해 공정성·공익성 제고
- 종편·보도PP에 대한 '20년도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 마련, '18년도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철저 점검, 재승인 조건 관련 기준 정립을 위한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책임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	-	97.6	85 ※'18년에는 과제 I-1-1 (방송의 독립성과 제작 편성 자율성 확보)의 지표였으나, 목표-과제 체계 개편 으로 성과목표 I-2의 지표로 변경	'17년에 실시된 종편PP 재승인 심사의 조건으로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과거 추상적인 공적책임 의무부과 외에 '오보·막말 편파 사유의 법정제재를 매년 4건이하 유지'라는 엄격한 수량 조건을 부과 하였고, '17년과 '18년은 해당 사유의 법정제재가 급감함에 따라 목표치 (75) 추가 달성을하였음 다만, '20년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로서 종편 PP에 따라서는 법정 제재가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목표치를 85 로 설정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 0.5] *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원 정체제도 개선 등 ** 방송의 품격제고 계획 준수, 오보·막말편파 사유 방송심의위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심의제재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 조치 등	실적 점검 결과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매체간 경쟁이 심화되어 방송 광고매출 하락 등 경영환경 악화
 - 경영 개선을 위해 방송사업자가 광고 영업 등 수익성 개선에 집중함에 따라 방송의 핵심가치인 공적 책임 훼손 우려
- 재허가·재승인 심사와 조건 이행실적 점검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라는 여론 증가

□ 갈등요인

-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투자 확대 등이 필요하나 사업자는 경영여건 악화로 인해 투자에 소극적
 - 급격한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등 곤란
- 콘텐츠 투자실적 등 조건 이행실적 점검과정에서 사업자와 이행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 발생 가능

□ 갈등관리계획

- 재허가·재승인 심사 및 조건 이행점검시 공적 책무 관련 사항을 적극 점검하고,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을 사전에 공표하여 방송 사업자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이행실적 점검 관련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실시
- 기술개발 여건, 해외 동향 등 대내외 방송환경 변화를 감안, 정책 정비 등을 위한 방송사 의견수렴 등 실시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I-2-①)

□ 추진배경(목적)

- 방송매체 다변화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엄격한 재허가 심사 추진
 - 또한, '16~'18년도 지상파 재허가시 부가된 재허가조건*의 충실히 이행을 위해 철저한 이행점검 필요
- * 주요 조건 : 경영의 독립성, 편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통한 지상파방송의 공공성 제고 및 시청자 권익 증진
- 추진근거 : 방송법 제10조 및 제17조, 전파법 제34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허가조건 이행점검) '16~'18년도 지상파 재허가 심사시 부가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관련 조건에 대한 철저한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책임 제고 유도
- (재허가 심사) '19년도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6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 UHD 포함)*에 대한 재허가 심사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엄정히 심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재허가조건 부가 추진
 -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투자, 편성비율 등 중점 심사

* UHD 3개사(KBS, MBC, SBS) 4개 방송국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접수	4월	
	지상파 재허가 심사 세부계획 의결	5월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신청서 접수(설명회, 공고 등)	5~6월	
3/4분기	지상파 재허가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및 불이행 방송사에 대한 제재처분 등	8~10월	
	지상파 재허가 관련 시청자 의견접수, 기술심사, 법 위반 조회 등	8~11월	
4/4분기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1~12월	
	지상파 재허가 위원회 의결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국민)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정성 제고를 통해 방송에 대한 국민신뢰 증진과 민주적 여론수렴 환경조성

- 이해관계집단

-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및 전파법에 따라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 조건에 따른 이행실적 제출 의무가 있음

□ 기대효과

- 지상파방송사에 대한 공정하고 엄격한 재허가 심사 및 조건 이행점검을 통해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등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	-	신규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세부계획 마련 및 재허가 심사 여부의 목표는 100% ○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재허가 조건 이행률의 목표는 국정과제 목표와 동일한 85% ○ 각 과제의 목표를 측정산식의 과제 비율로 환산 <p>- 재허가 세부계획 마련 목표 ($100\% \times 0.2$) + 방송의 공적책임 관련 재허가 조건 이행률 ($85\% \times 0.5$) + 재허가 심사 여부($100\% \times 0.3$)</p>	$[(재허가 세부계획 마련 \times 0.2)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times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심사 여부 / '19년도 재허가 대상 방송사 수) \times 0.3]$	실적자료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I -2-②)

□ 추진배경

- 국회^{*} 및 시민단체^{**} 등은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이행 필요성을 제기하며 엄격한 재승인 심사 등을 요청

* 종편사업자의 특혜를 해소하고 재승인 심사를 원칙대로 실시해야 함('17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질의, '17.10월), 종편의 공정성 문제 지적('18년 국정감사 민중당 김종훈 의원 질의, '18.10월)

** 엄격한 종편 재승인 심사 실시 요청(민주언론시민연합 논평, '17.2.18), 종편 특혜 모두 폐지 요청(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의견서, '19.2.15.)

- '17년도 종편PP 재승인시 심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방송의 공적 책임 등과 관련하여 재승인 조건^{**}을 부가한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 필요

* 공적책임 및 공정성·공익성 확보가 미비하여 출연자의 정치적 편향성, 막말 방송이 계속되고 있어 방송의 품격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오보·막말·편파 사유 방송심의위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 심의 제재 방지를 위한 검증기구 운영, 법정 제재시 출연정지 조치, 콘텐츠 투자계획 준수 등

- 종편·보도PP 승인·재승인 심사의 실효성 제고 및 철저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해 콘텐츠 투자비 인정 기준 등 제도개선 필요
- 추진근거 : 방송법 제17조, 방송법 시행령 제16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재승인 심사 대비) '19년도에 변경 수립된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20년도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안) 수립
 -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 상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20년도 재승인 심사방향 및 심사항목 등의 사항을 수립
- * 결과 점수별 재승인 유효기간·이행점검주기 등을 차등화(인센티브 or 페널티 부여)
- (이행실적 점검) 종편 4사가 제출한 '18년도 이행실적을 확인하고 현장실사 및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통하여 이행 여부 점검
 - (방송의 품격제고) 방송사가 제출한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 현장 실사 등 방법으로 점검
 - (조화로운 편성) 제출된 프로그램 장르 실적을 확인하고 장르가 불분명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장르 판정
 - (콘텐츠 투자) 방송사 제출 투자금액에 대하여 현장실사를 통하여 증빙자료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투자금액 확정
 - (경영 전문성·독립성 및 외주 상생방안)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정부 표준계약서 사용·사전제작비 지급 확대 여부 등 확인
- (제도개선) 이행실적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자체제작비 산정 기준 등의 문제점 보완
 - 정책연구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직접제작비와 간접제작비의 구분 등 기존 자체제작비 산정기준을 명확화·구체화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관련 제출 자료 점검	2~5월	
	자체제작비 산정기준 등 제도개선(안) 관련 연구반 회의	3~9월	
2/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관련 현장실사	6~8월	
3/4분기	자체제작비 산정기준 등 제도개선(안) 마련	8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세부계획 수립	8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관련 외부 자문반 회의	8~10월	
4/4분기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보고	10월	
	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 후속조치(필요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 종편·보도PP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를 통하여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 증진 및 합리적이고 공정한 여론 수렴 환경 조성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세부심사계획 마련 및 제도개선을 통해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승인 심사 가능

□ 기대효과

- 재승인 심사 세부 계획 마련을 통하여 종편·보도PP에 대한 공정한 재승인 심사를 도모하여 방송의 공공성을 제고 및 시청자 권익 보호
- 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방송사업자 경영의 투명성·자율성 제고, 방송 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등에 기여
-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관련 기준 정립을 통하여 방송사업자의 조건 이행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실적 점검의 실효성 제고

관련 재정사업 내역 : 해당 없음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종편·보도PP의 공적 책무 제고율(%)	-	-	신규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승인 세부계획 마련과 제도 개선안 마련의 두 과제의 목표는 100% ○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재승인 조건 이행률의 목표는 국정과제 목표와 동일한 85% ○ 각 과제의 목표를 측정산식의 과제 비율로 환산 <p>- 재승인 세부계획 마련 목표 ($100\% \times 0.2$) + 방송의 공적 책임 관련 재승인 조건 이행률 ($85\% \times 0.5$) + 제도개선안 마련($100\% \times 0.3$)</p>	$[(재승인 세부계획 마련 \times 0.2) +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비율 \times 0.5) + (제도개선안 마련 \times 0.3)] \times 100$ <p>*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 PP 재승인 조건 이행 간수 / 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p>	실적자료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엄격한 대응 및 이용자역량강화 활동을 통해 이용자 권익을 증진
-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및 유노출 대응, 인터넷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스팸 유통 차단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 그간의 성과

-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신 복지 구현을 위한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19~'21)'을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정책 비전 제시
-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 등에 대한 정책안을 도출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서비스 해지제한, 부가통신사업자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해 제재
- 단말기 불법지원금 등 과다경쟁 완화 및 투명한 요금경쟁 유도, 국내외 단말기 비교공시 등을 통하여 가계통신비를 절감에 기여
-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인터넷 방송 결제 가이드라인 마련, 이동통신 맞춤형 분쟁조정 기준 등을 통한 이용자의 권리 강화
- 글로벌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국외 재이전시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국내대리인 제도 도입, 이용자 대상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기업의 자율규제 지원 등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절차 완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도모

- 개인정보 유출사고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 기획점검 및 불법ID 상습거래자에 대한 경찰수사 의뢰 등 사전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 계층별 맞춤형 교육, 생활밀착형 홍보 등 인터넷윤리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정보 유통 차단 강화 및 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인터넷 상 역기능에 대응

◇ 중점 추진내용

-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19~’21)’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여 기존 사업자 규제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 정책 환경 조성
- 통신분쟁조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속한 통신분쟁조정 실시
- 결합상품 관련 불공정행위, 별정·부가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신유형 금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율적 법규준수 환경 조성
-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대상 확대 등 통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 유도
-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보호와 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규 ICT 산업 활성화 간에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개인정보 활용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해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지원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
- 사이버폭력 예방 및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범국민 캠페인 전개 등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불법유해정보 및 불법스팸을 차단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4차 산업혁명 본격화 및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하고,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공정·상생의 시장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방송통신이용자의 주권을 강화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8	12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① 이용자 권리 강화 추진율
II-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
①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리강화		①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률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 유선시장 정부가이드 준수율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① 단말기유통법 온라인 준수율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①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②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만족도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항 시정조치 건수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 사업자 수 ②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
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①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정탐) · 삭제율
③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①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②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불법 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④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① 휴대전화·이메일 스팸수신량 ② 임시조치 개선 등 입법지원 추진율

(1) 주요내용**□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 확립**

-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통신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및 자율규제를 확대하여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 통신장애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처방법 및 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피해보상 제도를 마련
- 통신서비스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방법 개선* 및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평가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평가 방식 도입 등 개선 방안 마련
 - ** '19년 부가통신서비스 중 이용자수 등 기준 상위 4개사 포함(유튜브, 페이스북 추가)
- 인터넷·모바일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는 플로팅·신종앱 광고 제도개선 및 결합상품서비스 해지절차 간소화 시스템 구축 추진
- 지능화·다양화되는 불법스팸에 대해 AI기반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대응체계를 고도화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

□ 이용자 역량 및 권리 강화

- 통신서비스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단말기 출고가 등 비교공시를 오픈마켓, 중저가 단말기로 확대(3종→5종), 정보이용료, 연체 알림, 미환급액 자동안내 등 정보제공 확대

- 이용자의 통신 등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피해예방 콘텐츠 개발·보급 및 교육을 강화
 - 음란물 유통,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효과적인 접근 차단 수단 마련* 및 단속 강화
 -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및 불법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 사이버 안심존앱 보급 및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제도 확대 추진
- * URL차단기술(게시물 단위)과 SNI차단기술(사이트 단위) 병행 추진
-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상설협의체를 구성, 사업자 자율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정보판별력 제고를 위한 미디어교육을 강화
 - 사이버 폭력·범죄 증가,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윤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인터넷윤리 교육 강화 및 인터넷 윤리체험관 확대(3개 → 4개), 국민 참여형 캠페인 등 추진

□ 상생협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으로 이용자 편익 제고

- 단말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통시장 점검 및 온라인판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 등 추진
- ICT 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제도 정비 추진
-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 SO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명확화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 포털, 앱마켓, O2O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법 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사업자의 투명성 원칙 등 가이드라인 제정 및 플랫폼사업자의 CP에 대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강화
-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유발하는 불공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중지제도 도입,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금지 행위 규제개선 등 추진
-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사업자 규제 집행력을 제고하는 등 인터넷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방안 추진

□ 지능정보화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정립

- 4차 산업혁명 및 지능정보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지능정보시대 대비 이용자 보호를 강화
-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국내외 ICT 기업과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2) 성과지표

성과 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이용자 권익강화 추진율 (%)	신설	100	100	100	100	100	이용자 보호체계 확립 및 정보 제공 강화 등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통신환경 구축을 위한 주요 지표의 목표달성 결과 측정	① 이동통신분야 피해구제 기준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자율점검 실시 × 0.25 ② 통신서비스 이용정보 제공 확대율 × 0.3 1) 단말기 출고가 비교공시 대상 : 오픈마켓 확대 2)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대상 : IoT단말 확대 ③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기반 조성 추진율 × 0.2 (전문가 등 협의회 구성 × 0.05 + 의견 수렴 4회 × 0.05 + 사업자 자율 가이드 라인 원칙 마련 × 0.1) ④ 이용자교육 인원확대(1.5%) × 0.25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등 가이드라인, 정보게시 홈페이지 (wiseuser)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5G 상용화, 지능정보사회 도래 등 통신환경 변화로 인한 신규 서비스 출현, 서비스의 복잡·다양화로 이용자 피해 예측이 어려움
- 시장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가 요구되나, 조직 및 인력 등의 한계
-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사전·사후규제의 정합성 검토, 기간통신 사업자 중심의 규제체계 재정립을 위해서는 관계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조, 입법적 뒷받침이 요구됨

(4) 기타

통신 이용자보호 종합계획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정책정보>「통신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19~'21)」

성과목표 II-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1) 주요 내용

- 이용자보호 중장기 계획 마련 및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 할 수 있는 이용자보호환경 조성
- 결합상품 및 별정부가서비스 증가 등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실태점검 강화
-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불법 지원금 등 과다경쟁을 완화시키고, 투명한 요금경쟁 유도로 통신비 절감 추진
-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정보제공과 보호활동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통신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건)	신규	7	8	유무선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는 통신시장의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 하므로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실태점검 및 시정 조치를 통한 개선 실적	내부자료, 제재조치 관련 상정안건, 실태점검 보고서 등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4차 산업혁명 본격화) AI, IoT, Cloud, Big data 등의 기술로 혁신된 새로운 생태계의 도래로 ICT 기반의 新산업 서비스 활성화

- (탈 국경·서비스 양상) 자율주행차, 원격의료 등 지능정보 서비스가 글로벌 사업자·서비스간, 네트워크·제조·서비스사간 제휴형태로 제공되면서 새로운 경쟁관계 형성
 - ※ 글로벌 제조·IT 기업 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위한 글로벌 동맹을 맺고 있으며, 원격의료·챗봇 등 서비스의 융합화에 따른 서비스 범위 정립 어려움
- (新 서비스 이용자 보호) AI·IoT·O2O 등 복잡하고 다양해진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이용자 불편 및 피해 또한 복합적으로 진화될 전망
 - AI의 법적 지위 및 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플랫폼·미디어 등 새로운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 ※ 英 ‘자율주행차량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17.8월), 日 ‘인공지능 개발 윤리 가이드라인’ 마련(‘16.12월)
- (플랫폼사업자 규제 필요성) 인터넷플랫폼의 영향력 증대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이용자이익저해 행위로 인한 생태계 전반의 경쟁 저해를 대비하여 구체적 금지행위 유형마련 등 규제방향 정립 요구
- (피해보상) 최근 네트워크 오류 및 데이터 폭주, 화재 등 잇따른 통신장애로 이용자 피해보상 방법 및 기준에 대한 관심 증대
 - ※ ‘18.11월(KT), ‘18.4월(SKT), ‘17.9월(LGU+), ‘17.7월(LGU+)’
- (분쟁조정제도 확산) 각 산업별로 이용자 피해에 대해 효율적으로 중재하고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분쟁조정제도를 도입·운영 中
 - ※ 주택임대차분쟁조정(‘16.5월, 법률구조공단),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15.12월, KISA)
- (사후규제 강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전담조직 설립 및 인력충원 등을 통한 시장조사 체계 강화 추세

□ 갈등요인

-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방송통신 생태계가 기간통신 위주에서 부가 통신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는 등 급속히 변화
 - 특히 모바일, IoT 등 융합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재, 이용자 피해구제제도는 아직 미흡하여 규제체계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반면,
 - 해외사업자에 대한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규제 강화는 국내외 기업의 역차별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고, 과도한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 성장을 저해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
- 사업자의 위법행위 역시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설정·제재보다는 각 분야에 적합하도록 자율적인 상생방안 마련이 필요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으나, 통선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요구 지속
- ICT 생태계에서 인터넷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인해 생태계 전반의 경쟁과 혁신이 저해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 ICT 산업의 역동성으로 인해 사업자 행위에 대한 예측이 매우 제한적일 뿐 아니라 특정 행위에 대한 효과 분석은 사후적으로 가능한데 이에 대한 축적된 사례분석이 거의 없다는 한계가 존재

□ 갈등관리계획

-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제재는 강화
하되,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
-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조화로운
이용자 보호정책과 공정경쟁정책을 추진
- 이용자 피해예방과 구제를 위한 이용자 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를
통해 능동적·적극적 이용자가 될 수 있는 기회 제공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익강화(II-1-①)

□ 추진배경(목적)

- 통신분쟁조정제도 도입 및 시행('19.6.12.)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인터넷 환경변화와 함께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 이슈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할 공론화 기구 지속 운영
 - 제1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결과 중 역외규정·국내대리인 제도 등은 입법화가 되는 성과도 있었지만, 추가 논의 및 구체화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도 존재
 - 특히, 사업자간 계약으로 결정되어 협상력이 약한 중소CP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망이용료에 대한 개선이 시급
- 통신시장 사전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이용자보호를 위한 사후 규제 체계를 재정립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통신·인터넷 서비스의 다양화에 따라 새로운 분야의 조사와 제재의 적법성에 대한 이의제기 역시 증가하고 있어, 조사체계 관리·감독 강화 및 선진화를 통한 조사의 신뢰성 확보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이용자와 통신사업자간의 분쟁 조정에 필요한 분쟁조정 절차 및 방법,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하위 고시를 개정하고,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하여 5G 도입 등에 따른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사후규제체계 개편 방안 등을 논의
-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권 등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의 정책과제별 실행방안 구체화, 사전규제 완화에 따른 사전·후 법제간 정합성 및 보완사항 점검 등 법제정비 실시
- 공정한 망 이용료 협상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협상의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한 망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과기정통부 공동)
- 조사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디지털증거 자료 확보를 위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도입 등 조사 절차 관리 강화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재정사건 접수 및 처리	연중	
	통신법제연구반 운영	2월~	
2/4분기	제2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구성	6월	
	통신분쟁조정제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6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6월~	
3/4분기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도입	9월	
4/4분기	조사심결관리시스템 구축	12월	
	조사업무 매뉴얼 마련	12월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조사관 전문 교육 실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통신분쟁 당사자) 이용자와 통신사업자의 소모적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여 양 당사자의 노력과 시간, 비용 절약

○ 이해관계자

- (통신사업자) 플랫폼 사업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은 사업자에게 규제신설로 여겨질 수 있으며, 세부 실행계획별 유불리에 대한 입장 차이 발생

□ 기대효과

- 통신분쟁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통해 이용자 권리구제 강화
-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정책이슈와 상생 협력 방안 등을 제안함으로써 정책수용도를 높이고 통신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운영지원(7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무정보화(308) -방송통신시장 조사시스템 운영 	일반회계	- (36.4)	4.9 (45.6) - 4.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통신분쟁조정제도 운영률(%)	-	-	-	100	분쟁조정제도의 운영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① 분쟁조정제도 운영규정 마련 ②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③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6회) ④ 분쟁조정제도 이용 활성화 홍보 활동 4가지 지표의 목표달성을 설정	분쟁조정 운영 기준 마련×30%+ 분쟁조정위원회 구성×20%+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개최(6회)×20%+ 활성화 홍보 활동×30%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및 운영세칙,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안, 통신분쟁조정 처리대장, 이용자 안내서 및 기고문 등 홍보자료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Ⅱ-1-②)

□ 추진배경(목적)

- 5G 상용화, IoT 상품 결합 가속, 통신사와 MSO 간 합병 등 통신시장 환경 변화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조사·제재를 통해 공정경쟁 질서 확립 및 이용자 이익 보호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판매점을 통한 유선상품 가입시, 판매점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19.3월)
-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예방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해 실태점검('19.11월) 및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19.11월)
- 결합상품 해지시점에 약정기간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할인 반환금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주 계약상품 기준으로 약정기간 통일 방안 마련('19.12월)
- 유선 결합상품 이용자가 신규사업자에게 한번의 신청만으로 사업자 변경(가입·해지)이 가능하도록 '결합상품 사업자 전환 시스템(Onestop Switch-System) 구축 추진('19.12월)
- 포털 및 앱마켓 등 인터넷플랫폼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19.9월) 국내외 규제정책 및 사례 등 모니터링(연중)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결합상품 해지제한 관련 사실조사 실시	1월	
	유선분야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	3월	
2/4분기	앱마켓시장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등 현황파악	4월	
	포털 부동산 및 동영상 서비스 광고 관련 현황파악	5월	
	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 고시 적용 세부기준 마련	6월	
	허위·과장광고 관련 실태점검	6월	
3/4분기	동등결합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실태점검	8월	
	집합건물 독점 계약 제도개선 방안 마련	9월	
	인터넷플랫폼시장 서비스별 현황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9월	
4/4분기	유·무선 결합시장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실태점검	10월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 개선안 마련	11월	
	결합상품 약정기간 통합방안 마련	12월	
	결합상품 원스톱 전환(OneStop-Switch) 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12월	
연중	유선결합시장 및 인터넷플랫폼시장 주요 동향 모니터링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혜택 수혜

※ 유선통신서비스(인터넷, IPTV 등) 가입·이용·해지 신청자 등(전국민)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 통신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인터넷플랫폼사업자 등

□ 기대효과

- 이용자 피해를 유발하는 신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파악 및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법 집행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과 이용자 편의 증진 도모
- 경쟁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제한을 통해 경쟁열위사업자의 부당한 피해 예방 및 권익 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 인터넷 환경조성(I -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환경조성(2141)	일반회계	18.81 (42.00)	20.59 (46.52)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18.81	20.59
- 방송통신시장 상시 조사분석체계 운영		0.81	0.81
- 인터넷플랫폼 시장 공정경쟁 환경조성		2	2.4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유선시장 정부가이드 준수율(%)	91.9	82.0	84.2	84.8 <p>'18년도부터 허위·과장광고 모니터링 지표를 추가하였고, 허위·과장광고 준수율을 포함하여 산출한 2개년 ('17~'18년) 실적치를 고려*하여 설정 * '17년 : 83.6% ⇒ '18년 : 84.2%(0.6%p 상승) ⇒ '19년 : 84.8%(0.6%p 상향)</p>	[(경품가이드 준수율 + 허위·과장 광고 가이드 준수율) / 2] * 100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③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Ⅱ-1-③)

□ 추진배경(목적)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추진 및 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더욱 지능화되고 다양해진 법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필요

* 단말기유통법 주요내용 :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공시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공, 판매점 사전승낙제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가계통신비 경감 정책)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단말기 구매 비용 경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말기 가격 인하 유도 정책 지속 추진
 - (단말기 국내외 출고가 비교 공시 보완) '18년 5월부터 17개국 13개 단말기종에 대해 출고가 비교 결과를 공개하여 이용자의 합리적인 소비와 사업자의 출고가 인하를 유도
 - 비교 공시 대상으로 중저가 단말기종 확대 및 오픈마켓 가격 포함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19.6월)
 -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 방안 마련) 국내외 AS 운영실태 점검 및 해외사례 조사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19.12월)
 - (자급제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자급제 단말기의 공급·구매·가입·이용 단계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피해 유형을 조사·분석하여 가이드라인 마련(~'19.12월)

- (현상경품 기준 개선) 5G 등 신규서비스가 출시됨에 따라 사업자간 경쟁 촉진 및 이용자 후생 제고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현상경품 횟수 상향 등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 추진(~'19.3월)
- (단말기유통시장 안정화)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증가, 온라인 불법행위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점검 강화 및 제도보완
- 신규단말기 출시 등에 따른 이동통신시장 과열에 대비한 자율 상황반(KAIT, 이통3사) 운영(연중)
- 이통사,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채널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 조사·제재(~'19.3월)
-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불·편법 온라인유통점에 대해 시장에서 자율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협의회(이통 3사, KAIT 등 참여)'구성·운영(~'19.4월)
- 국민신문고 등 민원을 매 반기별로 집계·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유통점 사설조사 실시(~'19.8월)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조사·제재	3월	
	현상경품 기준 개선	3월	
2/4분기	온라인 판매 협의회 구성·운영	4월	
	단말기 출고가 국내외 비교 공시 제도 개선	6월	
3/4분기	단말기유통법 준수 취약지역 실태점검(민원)	8월	
4/4분기	과도한 단말기 수리비 인하 방안 마련	12월	
	자급제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12월	
연중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조사 제재	1~12월	
	단말기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자율상황반 운영	1~12월	
	온라인 모니터링 실시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단말기 불법 지원금 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 해소,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 등 통신비 경감으로 이용자 편의 제고
- (이동통신사업자) 사업자간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업 이미지 제고

○ 이해관계자

- 단말기유통법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이동통신사업자, 제조사, 유통점 등

□ 기대효과

-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 소모적인 지원금 경쟁을 서비스와 요금에 기반한 경쟁으로 유도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유도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 인터넷 환경조성(I-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조성(2141)	일반회계	18.81 (42.00)	20.59 (46.52)
▪ 방송통신시장 조사분석(302)		18.81	20.59
-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실시		14.34	16.14
- 이동통신 단말기 국제비교		1.66	1.2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단말기유통법 온라인 준수율(%)	-	-	-	80 온라인을 통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용자 피해 예방과 통신시장 안정화를 통한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를 성과지표로 설정 ※ '17년(77%), '18년(78.5%) 실적 치와 점진적인 법 준수율 향상을 고려하여 전년 실적 대비 1.5%p 상향하여 목표치 설정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총 건수) ×100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 점검내용 : 지원금 공시게시 위반, 불법지원금 지급, 특정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오인 안내, 경품 과다 지급, 허위·과장 광고 등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Ⅱ-1-④)

□ 추진배경(목적)

- 방통통신서비스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이용자의 불편사례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제공 강화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및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 제고
- KT 통신국사 화재('18.11월) 사례와 같이 통신재난 발생 시 이용자 피해 보상 등 효율적인 이용자보호 대책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및 문자메시지 발송, 무선데이터 정보제공 등을 통한 이용자 역량 강화
 - 장·노년층, 장애인, 농어민, 다문화가정, 정보취약계층 및 일반인 대상 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 ※ 정보취약계층 관련 기관과 교육 협력체계 구축, 계층별 콘텐츠 제작·보급, 전문 강사단 육성을 통한 전국적 교육 실시
- 통신금융범죄 피해유형에 대한 효율적 예방을 위해 민관 조기 경보 협업체계를 통해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대국민 피해예방
- 급변하는 방송통신서비스 환경 변화에 따른 건전하고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이용자보호주간 행사 개최
- 이용자의 사용량이 높은 앱 및 홈IoT서비스 앱을 대상으로 합리적 데이터 사용 제고를 위한 데이터 소모량 측정 및 정보제공
- (제도개선 및 관리·감독)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확대, 통신재난 관련 제도개선, 이행 및 실태점검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기반 조성

-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한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방식 개선

※ 이용자 수가 많고 영향력이 큰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평가 대상으로 확대

- 초연결 시대에 통신재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 마련 및 통신사업자의 장애 사실 고지 의무화
- 맞춤형(이동통신분야) 피해구제 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자체 피해구제 기준 점검
-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 돌출광고(플로팅광고) 삭제 제한, 모바일 앱결제,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제한 등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여부 점검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기관 협의	3월	
	국민생활밀접형 앱 측정대상 선정	3월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	3월	
2/4분기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강사단 집체교육	4월	
	'19년도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의결	5월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 마련	6월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6월	
3/4분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만족도 조사 및 현장/서면 평가	5~9월	
	계층별 교육용 영상 및 점자책자 제작·보급	7월	
	방송통신 피해예방 강사단 보수 교육 및 간담회	9월	
4/4분기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주간 행사 개최	10월	
	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10월	
	무선테이터 소모량 측정	4~12월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준수 체크리스트 마련 및 점검	10~12월	
연중	대국민 통신금융범죄 피해예방 정보제공	수시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점검	연중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 장·노년층,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정보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역량강화 및 편의 증진

○ (이해관계자) 통신사업자

-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업무평가 확대, 이용자 피해구제 기준 공유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발적인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 마련

□ 기대효과

- 정보취약계층 및 모든 국민의 방송통신서비스 활용 및 피해예방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이용자 역량제고 및 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
-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관심제고 및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통한 이용자 권리 증진 및 만족도 제고
-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조사 및 시정조치로 자유로운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리보호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 인터넷 환경조성(I-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 조성(2141)	일반회계	23.19 (42.00)	25.93 (46.52)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23.19	25.93
-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		13.50	16.81
- 인터넷 불편광고 금지행위 모니터링		-	0.65
- 모바일 앱결제 피해예방 및 이용자보호		5.09	4.9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16 '17 '18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12.5	14.7	15.2	16.0	'18년도 실적(15.2%) 대비 0.8%p 상향한 16%로 설정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 - 교육 전 역량 점수) / 교육 전 역량 점수] \times 100$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만족도(점)	85.3	75.7	82.2	80	'16~'18년 평균 만족도는 81.8점이나, 편차가 있어 5단계 척도중 '만족' 단계의 최고 점수인 80점을 '19년도 목표치로 설정 * 매우불만(0~20), 불만족(21~40), 보통(41~60), 만족(61~80), 매우 만족(81~100)	$\frac{\sum \text{기간통신사업자 만족도 점수}/\text{기간 통신사업자 수}}{\geq 80}$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 사업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시 * 처음 도입하는 지표로 리스크가 있어 '19년도에는 참고지표로만 활용

※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교육 역량 향상률’ 지표는 한국정책평가연구원의 컨설팅, 기획재정부, 조세제정연구원의 검토를 통해 ’16년부터 신규성과 지표로 최종 반영

성과목표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드론 등 신규 ICT 분야에서 개인·위치정보가 보호되는 동시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개선 추진
-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소규모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절차 완화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도모
- 유출사고 빈발 분야, 민원 다발 분야 등에 개인정보 취약분야에 대해 보호조치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정보 유출 예방
-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대국민 캠페인 전개, 불법유해정보 차단 강화 등을 통해 선진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
- 무작위 음성광고 발송사업자 현장점검 실시, 빅데이터 기반 스팸탐지 등 분석모델 개발 등 불법스팸 대응체계 기반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또는 자료출처)	
	'18	'17	'18	'19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항 시정조치 건수(건)	80	73	68	75	최근 3년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항의 추세 및 평균 시정조치 건수인 74건을 중 74 건을 목표치로 설정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시정조치 건수	시정조치 안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사이버공간 확장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경로가 다양화되고 지속적으로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드론 등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유노출에 대한 우려 증가
-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과 새로운 ICT신기술 발달에 따라 사이버 폭력 및 불법유해정보 확산 등 사회문제 대두
-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보급 증가로 생활양식과 소통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사이버 역기능 이슈 발생에 따른 인터넷윤리교육 확대 필요

□ 갈등요인

- 중소·영세 사업자의 경우, 개인·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법제도를 미준수하는 사례 발생
-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위치정보 규제는 사업자의 부담을 초래하고 서비스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 존재
- 스파머의 통신서비스 이용이 통신사업자의 수익과 연결되는 만큼 통신사업자의 적극적인 스팸대응 노력 강화 필요
-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홍보방안 마련 필요

□ 갈등관리계획

-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 보호에 대한 필요성과 법적 의무 등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홍보 실시
- 개인·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분야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 정비
- 비식별 조치 등을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위해 4차위, 국회(4차특위) 등을 통해 시민단체 및 산업계와 협의
- 실시간 스팸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불법스팸 전송자 집중단속과 동시에 사업자와 이용자 대상 스팸방지 인식제고 설명회 등 개최
- 교육의 접점(교사, 학부모)을 활용하여 교육대상자 저변을 확대하고,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하여 참여기반의 인터넷윤리 콘텐츠 확산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Ⅱ-2-①)

□ 추진배경(목적)

- 개인·위치정보 관련 법제도 개선, 인식제고 등을 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조성
-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인·위치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생활 보호와 산업 발전의 균형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인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자율 규제 촉진 및 지원 등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주민번호 대체수단 안전성 확보 및 편의성 개선을 위한 본인 확인기관 점검 및 온라인 본인확인 정책개발
- (자율환경 조성) 개인정보 관리의 수준 향상을 위한 통합인증 제도 운영 및 인증제도 기반 확충
 -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촉진·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 및 컨설팅 지원, 자율규제 활동에 따른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 (인식제고) 전 국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홍보활동 지속 및 개인정보보호 취약분야·정보소외계층 대상 교육 추진
- (국제협력 강화) EU 회원국 법률 정보 제공, 컨설팅, 기업 담당자 대상 교육, 세미나 개최 등 기업 지원

《 위치정보 정책 》

- (제도 개선)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 등 위치정보법 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및 해설서 등 개정 추진
 - 사물위치정보사업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제 폐지 등 단계적 진입규제 완화 방안 마련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특허출원·창업교육 등을 지원하여 사업화 연계 유도
 - 스타트업 및 중소 위치정보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컨설팅 실시 및 클라우드 서버를 이용한 기술적 보호조치 지원
 - 전국 Wi-Fi DB를民間에게 개방하여 위치정보 시장 진입 시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한 신규 진입 촉진
- (긴급구조 강화)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을 통해 요구조자의 위치정보를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히 제공
 - 위치정보 전달 체계상 유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증시험을 실시 하되, 기존 대비 품질측정 대상지역 및 평가지표(측위 정확도, 성공률 등) 등을 확대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 품질제고 유도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내대리인제도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3월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3월	
	'18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	3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관련 교육·컨설팅 추진	2~12월	
	사업자·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2~12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플랫폼(LBSP) 운영	1~12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舊 PIMS) 및 통합 인증제도(ISMS-P) 운영	1~12월	

2/4분기	개인정보 배상책임 보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6월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6월	
	법정대리인의 동의확인 방법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위치정보법 시행령 개정	6월	
	위치정보법 해설서 개정	6월	
	EU 회원국 법률 정보 제공	4~6월	
	사업자 대상 컨설팅, GDPR 교육, 세미나	4~6월	
	아이핀, 휴대폰 본인확인기관 정기점검	4~5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 공모전	5~7월	
	위치정보사업자등 대상 개인·위치정보 보호 교육 실시	5~12월	
3/4분기	긴급구조 위치측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실증시험	5~12월	
	자율규제 심의평가위원회 운영	9월	
	정보통신망법 상 손해배상책임보험 제도 홍보	7~9월	
	EU 회원국 법률 정보 제공	7~9월	
	2019 인터넷 내정보지킴이 캠페인 추진	9~11월	
	우수 위치정보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 지원	7~12월	
4/4분기	중소·스타트업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등 지원	7~12월	
	비식별 정보 활용 절차 개선방안 안내서 마련	12월	
	CBPR 세부 운영 체계 및 활성화 방안 마련	11월	
	개인정보 국가자격 검정 운영 방안 마련	12월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12월	
	Wi-Fi AP DB 개선 및 민간 공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개인·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이용자가 온라인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 글로벌 인증체계 가입 추진을 통한 해외진출 용이성 제고 및 개인정보 법규준수 비용절감 등 국내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국제경쟁력 강화

- (예비·스타트업 위치정보사업자) 공모전을 통한 우수 비즈니스 모델에 사업화를 지원하여 신규 위치기반 서비스 발굴
- (중소·영세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컨설팅 및 산업관련 동향정보 제공
- (일반국민) 긴급구조시 요구자 위치정보의 정확도를 향상하여 긴급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 지원

○ 이해관계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관련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활용 가능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업 및 연구단체)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분야 투자확대로 관련 보안기술 업체와 연구기관의 전문성 향상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 등 근본적 예방

□ 기대효과

-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위치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를 위한 융합형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개인정보의 자율관리 환경 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의 사생활 보호 및 이용환경의 안전성 강화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경쟁력 강화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국가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법규준수 비용 절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 인터넷 환경조성(I-1-정보화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2151)	일반회계	100.16 (131.09)	101.47 (132.40)
▪ 개인정보보호 강화(302)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1)			
		94.91	97.07
		5.25	4.40
방송통신 인터넷 환경조성(I-2-일반재정①)			
②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3251)	방송통신 발전기금	27.78 (99.90)	27.88 (102.32)
▪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304) ▪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기반 구축(311) ▪ 개인정보보호 전문가 육성 체계 구축(302)			
		15.08	12.88
		12.70	15.00
		-	3.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 사업자 수(건)	- 신규	62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유지 사업자는 최근 4년간 평균 5건씩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여 목표치를 설정 <table border="1"><tr><td>년도</td><td>'15</td><td>'16</td><td>'17</td><td>'18</td></tr><tr><td>건수</td><td>41</td><td>44</td><td>52</td><td>57</td></tr></table>	년도	'15	'16	'17	'18	건수	41	44	52	57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 대상 인증 유지 사업자 수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대상 인증 개선 사업자 수 + 신규 인증 발급 사업자 수	인증 심사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자격 유지 및 통합 인증 제도 개선·신규 발급 사업자
년도	'15	'16	'17	'18											
건수	41	44	52	57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점)	- 신규	86	사업수혜자 대상 행정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안내 및 정보 제공 노력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목표치를 설정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수혜자 만족도 × 0.5) + (오프라인컨설팅 수혜자 만족도 × 0.5)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수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만족도 조사										

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Ⅱ-2-②)

□ 추진배경(목적)

-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원유인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서비스(IOT, O2O 등)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또한 높아짐
 - 이에, 온라인 상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업자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분야 실태조사, 모니터링 등을 실시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출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 》

- 최근 유출사고 발생 분야 및 생활밀착형 신유형 서비스 등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집중 조사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의 2차 피해방지 및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 해외사업자 침해사고 조사 》

- 해외 서비스의 글로벌화 및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등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해 실태점검

《 모니터링 》

- 개인정보 유출 등을 사전예방하고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스마트폰 앱·웹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모니터링 후 개선필요 사항에 대한 안내 및 개선조치 실시

- 국내외 검색엔진, SNS 등 웹사이트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노출 및 불법거래를 탐지·삭제하여 피싱 등 2차 피해 사전예방
-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전송(보안서버 등 설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후 개선조치

《 사업자 및 조사관 교육 》

- 개인정보보호의 강화와 침해사고 사전예방을 위해 정보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침해사례(해킹 등)」 맞춤형 교육 실시
-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관계 법령, 실태 조사 절차, 기술적 요소 등에 대한 교육 진행

《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 》

- 신규 침해위협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을 개정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강화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마트폰 앱·웹사이트 개인정보보호 실태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진행	1~12월	
	보안서버 설치여부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및 진행	1~12월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계시물 탐지·삭제 계획 수립 및 진행	1~12월	
	이미지 내 개인정보 노출 탐지·삭제 추진	1~12월	
	사업자 대상 개인정보 침해사례 교육	2~12월	
2/4분기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관 교육	4~12월	
	개인정보 불법거래 계시물 기획 탐지 실시	4~12월	
	관련 고시 등 개정 진행	5~12월	
3/4분기	모니터링 사업 관련 사업자 간담회 실시	7~9월	
	개인정보 취약분야 실태조사	7~12월	
4/4분기	'18~'19년 시정명령 이행점검	10~12월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1~12월	
연중	개인정보 유출 사업자 조사	1~12월	
	검경통보, 민원신고 등 개인정보 관리 실태조사	1~12월	
	해외사업자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유출사고 신속대응 및 개인정보 관리 취약분야 실태조사, 교육 등을 통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 구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침해사고 관련 교육, 취약분야 실태조사 등으로 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에 기여

○ 이해관계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및 관련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전예방
-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로 투자확대, 전문성 등 향상
- (위치정보/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보호 조치 강화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침해사고 등 근본적 예방

□ 기대효과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법규 강화 및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역량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호수준 향상 도모
- 취약분야 실태조사로 사업자들이 사전·사후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취해 개인정보보호 수준 제고
- 해킹 및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이용자 2차 피해를 예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자의 보호수준 향상 및 2, 3차 유출피해 사전예방
- 온라인상 노출되거나 불법 거래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탐지·삭제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 인터넷 환경조성(I-1-정보화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구축(21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 강화(302) ▪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환경 조성(301) 	일반회계	100.16 (131.09) 94.91 5.25	101.47 (132.40) 97.07 4.40
방송통신 인터넷 환경조성(I-1-일반재정①)			
① 공정경쟁 환경조성(21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 환경조성(301) 	일반회계	23.19 (42.00) 23.19	25.93 (46.52) 25.9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정탐)·삭제율(%)	신규	55.8	전년도 실적 및 지난 3년간 평균 증가율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left(\frac{(a_1 + \dots + a_n)}{n_1} \times 0.5 \right) + \left(\frac{(b_1 + \dots + b_n)}{n_2} \times 0.5 \right)$ n1 =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탐지 총건수, n2 =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정탐 총건수 ai(정탐건수), bi(삭제건수) = 개인정보 노출 불법유통 계시물 정탐 및 삭제건수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탐지 및 삭제·차단을 위한 전용 시스템

③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Ⅱ-2-③)

□ 추진배경(목적)

-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윤리교육*, 생활밀착형 온·오프라인 홍보 등 인터넷윤리 인식제고를 위한 활동 전개
 - * 국정과제의 실천과제(70-5,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로 100만 인터넷윤리교육 실시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정보 유통 차단 및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S/W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인터넷 상 역기능 대응
-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전 국민 대상 맞춤형 인터넷 윤리교육 추진

-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험하고 토론하며 스스로 교육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체감형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 연차별 인터넷윤리교육 목표 : ('19년) 17만명 → ('20년) 18만명 → ('21년) 19만명

- 장애청소년, 지역아동센터, 고령층 등 취약계층대상 인터넷윤리 · 사이버폭력예방 교육 강화
- 세대가 함께 교육을 받는 융합형 교육, 다양한 성인교육 과정에 인터넷윤리 교육을 연계하는 접목형 교육 등 신규 추진

○ 국민 참여형·공감형 인터넷 윤리문화 확산

- 아인세주간, 인터넷윤리 교수학습지도안 공모전, 동요제 등 참여형 캠페인을 통해 국민제안 콘텐츠 발굴 및 공감대 제고
- 포털사, 통신사, 교사모임, 청소년 동아리 등 유관기관(단체) 협력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 전개

○ 온·오프라인 생활밀착형 홍보 추진

- 생활밀착형(라디오, 버스, 지하철)홍보와 함께 계층별 문화 소비 공간(카페, 온라인 등)을 활용한 아인세 캠페인 추진

○ 온라인 상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안 마련

-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등 불법유해정보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등)의 기술조치 현장점검 강화
-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계·언론계·인터넷사업자 등과 다자간협의체를 구축하여 사업자 자율의 가이드라인 마련

※ 허위정보 게재자에 대한 수익배분 제한, 광고 후원주체 공개, 양질의 정보 우선노출(알고리즘 설계) 등 사업자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안 모색

- 청소년의 유해정보 접근 차단을 위한 유해정보 차단 S/W 및 스마트폰 중독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심존 보급 확대

※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수) : ('18년) 1,100개 → ('19년) 1,500개

○ 인터넷 규제 정책방향 전반에 대한 검토 추진

- 불법사이트 차단 및 피해자 보호라는 공익 추구와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의 인터넷 규제 적정성 연구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인터넷윤리,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운영기관 모집 및 선정	1월	
	불법촬영물 웹하드 카르텔 근절대책 방안 마련	1월	
	사이버안심존 참여학교 운영 확대	3~12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 관련 활동 지원	3~12월	
	특수유형의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조치 현장점검	1~2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주간 운영	3월	
2/4분기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추진	4~12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다자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4~12월	
	생활밀착형 인터넷윤리 홍보	6~12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4~6월	
3/4분기	인터넷윤리 교육 콘텐츠 개발	7~12월	
	아인세 창작동요제 개최	9월	
	창작콘텐츠 공모, 교수학습지도안 공모	9~10월	
4/4분기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기술적 조치 실태점검	10~12월	
	인터넷윤리대전 개최	12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방향 마련	12월	
	인터넷 불법정보 규제체계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 도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 17개 시·도 교육청, 유아·초등, 청소년, 학부모 등 전 국민
 - 통신사업자 및 포털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기대효과

- 계층별 맞춤형 인터넷윤리교육, 범국민 인터넷윤리 문화 확산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올바른 인터넷 윤리의식 획기적 제고
- 청소년의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환경 조성, 웹하드 사이트 상 건전하고 적법한 콘텐츠 유통 및 이용환경 구축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 인터넷 환경조성(I -2-일반재정①)			
②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3251)		66.62 (99.90)	65.44 (102.32)
▪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 조성(307)	방송통신 발전기금	46.43	44.87
▪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306)		11.43	12.25
▪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314)		8.76	8.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점)	85.5	87.1	87.3	87.5 조사대상의 변화가 발생(유아, 청소년→유아, 청소년, 성인, 취약계층)하여 동일한 대상에 대한 3년간 실적의 평균치가 부재함. 따라서 '18년도 목표 치인 87.2점에서 0.3점 상향한 87.5점을 목표치로 설정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100점 만점)	설문지를 이용한 서베이(Survey) 결과
특수유형부기통신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	-	신규	90 o '16~18년 기술적 조치 개선 (삭제) 실적(평균) 78,000건의 105%인 80,000건을 목표로 설정 o '18년도 채증자료의 중복률 (51%)을 고려하여 불법음란 정보 특징값 제공(방침위) 목표(41,000건) 설정	[(상시점검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 목표)x0.5]x100+ [(불법음란 정보 특징값(해시, DNA) 방침위 제공건수/ 목표)x0.5]x100	실적보고서

④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II-2-④)

□ 추진배경(목적)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운영 확대를 통해 불법스팸 유통을 최소화하고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해소 추진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임시조치 및 사이버 명예훼손 등 관련 제도 개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연 2회(3월, 9월) 스팸 신고건 및 탐지건, 휴대전화 문자·이메일 스팸 등을 조사하여 스팸 수신량·발신량, 스팸차단서비스의 차단율 등 결과 발표를 통해 통신사업자 등 자발적 스팸감축을 유도
-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강화를 위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음성 스팸 수집내역(녹음파일 및 텍스트)에 대한 이동통신사 제공방안을 마련(8월)하고 음성인식 성능 개선 등 추진(12월)
- 전화권유판매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정보통신방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금융·통신 등 분야별 사업자 대상 스팸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설명회 개최(연중/15회, 1,098명)
- 이용자 대상 불법 스팸 방지·보이스 피싱 신고 방법, 메신저 피싱 방지 및 대응 요령 안내 교육 실시(연중/39회, 1,089명)
- 스팸신고 등으로 수집된 대용량 스팸 데이터에 대한 업무처리 신속성 및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모델 정교화(12월)
- 웹팩스스팸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사업자 확대를 통해 팩스스팸 증거 자료 확보 및 팩스스팸을 수신하는 국민의 스팸신고 편의성 증대(8월)

- 스팸방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국제스팸대응협의체(UCENet)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2회/2월, 10월)
 - * UCENet(Unsolicited Communications Enforcement Network) : 불법스팸 등 원치 않는 통신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의체로 한국, 미국, 중국 등 31개국 100여개 기관 참여
- 임시조치 제도 개선, 사이버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확대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한 국회 입법지원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18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3월	
	'19년 스팸 관련 망법 준수여부 현장점검 추진	3월	
	정보통신망법(임시조치, 사이버 명예훼손) 개정 관련 입법 지원	3월 ~	
2/4분기	'19년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5월	
	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5월	
	스팸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안내서 설명회 개최	6월	
	스팸방지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UCENet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참석	6월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6월	
3/4분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임시조치) 수정대안 검토·보완	7월	
	웹팩스 스팸 간편신고 제공사업자 확대 추진	8월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 강화를 위한 음성스팸 수집내역 제공방안 마련	8월	
	'19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	9월	
4/4분기	'19년 하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	11월	
	스팸방지 인식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및 안내서 설명회 개최	12월	
	음성스팸 실시간 차단성능 제고를 위한 음성인식 성능 개선	12월	
	스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모델 정교화	12월	
	임시조치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1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수혜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
- (이해관계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전화권유판매자 등

□ 기대 효과

- 불법스팸 차단 대응 강화로 도박·불법대출 등의 스팸 유통 방지, 정부의 기술적·정책적 스팸차단 노력과 함께, 통신사의 스팸대응 노력을 유도하여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
 - 이용자에게 불편과 짜증을 유발하고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여 시간낭비와 생산성 감소를 야기하는 대량 스팸 발송을 사전에 예방
- 인터넷상 자유로운 소통문화 확산을 통해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디지털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
 -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제시자와 권리침해주장자의 입장을 균형있게 보호하고, 공익에 관한 표현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 인터넷 환경조성(I-2-정보화①)			
① 안전한 인터넷 정보 활용 기반 구축(2151) ▪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304)	일반회계	30.93 (131.09) 30.93	30.93 (132.40) 30.93

□ 성과지표 및 측정 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휴대전화·이메일 스팸수신량 (하향지표) (통)	-	-	15	17	'19년도 성과목표는 최근 3년간 스팸 수신량 평균* 및 정책효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17통으로 목표를 설정함 ※ '16년 20통, '17년 18통, '18년 15통 수신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 대상 1인 월 평균 수신량 측정	휴대전화·이메일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임시조치 개선 등 입법지원 추진율(%)	-	-	신규	95	법 개정은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큼을 감안하여, 입법 지원 추진율에 대한 목표치* 설정 * 의원실 설명 등 국회심의 대응 목표(7회), 간담회 등 임시조치 제도 관련 의견수렴 목표(4회)	임시조치 제도 개 선 국회 심의 대응 횟수 / 목 표) $\times 0.5] \times 100 +$ 임시조치 제도 관 련 의견수렴 횟수/ 목표) $\times 0.5] \times 100$	입법지원 실적 자료

기 본 방 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방송사 간 시청률 경쟁심화 등에 따라 방송에서의 막말이나 선정적·폭력적 방송프로그램이 여전하므로 방송프로그램이 청소년 등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추진 필요
 -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홈쇼핑방송사-납품업자 간,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시정 필요
- 유료방송시장에서 가입자 확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 침해 가능성 증대
 - 외주제작물 의무편성 도입으로 외주제작물 편성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외주제작시장이 확대되었으나,
 -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관행이 지속되어, 방송 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한류 방송콘텐츠는 관련 상품 매출증대, 관광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 중국시장의 위축 및 방송콘텐츠 관련 분쟁요인 증가 등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방송광고시장 악화로 방송사업자의 협찬 의존도가 심화되고 종편프로그램과 TV홈쇼핑사의 연계편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협찬거래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많은 중소기업들이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및 자금 부족으로 인해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송광고가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성장과 침체되고 있는 방송광고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 필요
 - 고정형 TV를 통한 실시간 시청 외, 스마트폰, PC를 통한 시청, VOD 방송프로그램 시청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 스마트폰 · PC와 VOD 시청이 증가하는 매체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 시청점유율 조사방법을 개선하여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고

◇ 그간의 성과

- 저품격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상, 고품격 방송언어 환경 조성을 위한 캠페인(자막고지, 공익광고) 등 실시
- 장애인방송 의무화로 지상파방송 및 유료방송까지 장애인방송 제공을 확대, 장애인용 TV 보급 등을 통해 방송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시정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준수를 유도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엄정한 사후규제를 실시하여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이 증가

※ 방송광고 법규 준수율 : '16년 79.8% → '17년 81.3% → '18년 84.9%

- 5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17.12.19, 국무회의 발표)'의 이행 상황을 유관부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점검하는 등 차질 없이 이행하여 외주사간 공정거래 환경 조성
- 한-베트남 공동제작협정 최종 합의/가서명 완료, 한-캐나다 공동제작협정 체결 협상 개시, 한-태국 공동제작협정 체결 협상 재개, 한-중국 FTA 후속협상 대응 등을 하여,
- 한류콘텐츠의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남방 거점국(베트남·태국 등), 신북방 거점국(중국) 및 미주권역(캐나다) 신규시장에 성공적인 안착 추진

-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국제기구 및 정부간 협력 강화 토대를 마련하고 방송콘텐츠 교류의 선도국가로써 해외 우수 공동제작 발굴(시상) 등 국제 공동제작 인식 제고와 한류확산 실행력 강화
- 광고총량제 시행(방송법 시행령 개정, '15.9월), 협찬고지 시간·횟수 등 형식 규제 완화(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16.3월·'18.10월), 가상광고 허용 범위 명확화(방송법 시행령 개정, '16.5월)등 방송광고·협찬고지 규제 개선
※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8.12.18.~'19.1.31.)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에 기여함

구분	제작지원 기업(개사)			매출액 성장률(%)	방송광고 집행액(억 원)
	TV광고	라디오광고	계		
2015년	32	78	110	4.3	82.3
2016년	45	40	85	10.7	128.8
2017년	54	42	96	13.1	138.0
2018년	52	45	97	27.3	205.5

◇ 중점 추진내용

-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함께 방송심의사례집 제작·배포,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심의사례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심의 기능 강화를 유도
- 방송취약계층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장애인용 TV 보급 시행 및 장애인방송 환경 개선으로 방송 접근권 확대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점검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 법규에 대한 수시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동시에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를 통해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확대 실시, 순수외주제작물 인정기준 심층 검토, 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편성 의무를 부과하도록 편성고시 개정 등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방송 공동 제작협정 체결(베트남·태국·캐나다 등)을 추진하고, 공동제작 관련 교류 협력 강화와 국내 방송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콘퍼런스 개최
- 방송콘텐츠 관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을 위한 방송 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발족·운영과 해외 방송시장 조사 등을 하여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방송한류 확산의 기반 마련
-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방송광고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효과적으로 방송광고를 활용 할 수 있도록 광고교육 및 원스톱 컨설팅 제공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제고하고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시청자 복지 증진 및 방송의 공공성 제고
- 협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협찬 제도 개선을 통해 협찬 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청권을 보호
-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제작 환경을 조성하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외주제작시장의 활성화로 시청자에게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미디어 복지 증진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다변화를 통해 중국 등 해외시장 여건 변동에 따른 리스크 축소 및 지속적인 방송한류 견인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여 미디어 영향력 독과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을 구현하여 방송의 공공성 제고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2	6	6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① 미디어시장 상생 발전율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①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① 방송시장(광고)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기반 구축 이행도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률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①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성과도	
③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① 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전략목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확대 실시 등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 지상파·유료방송 광고제도 개선을 통한 콘텐츠 제작재원 마련 및 방송광고판매·협찬 제도 개선을 통한 방송광고시장 공공성 확보
- 협찬제도가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찬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 방송내용의 선정성, 편파성, 폭력성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사후심의와 방송사의 자율심의 기능 강화
-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및 장애인용 TV 보급 시행 등 장애인방송 환경 개선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접근권 확대
- 위법한 방송광고·협찬고지에 대한 엄격한 사후 규제를 실시하여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및 건전한 방송광고·협찬고지 질서 확립
- 베트남·태국·캐나다 등 FTA 체결국을 대상으로 방송공동제작 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미디어시장 상생발전율(%)	80	81	82	83	84	85	'18년도 실적과 만족도 특성을 감안하여 '19년에는 81점을 목표로 설정	(외주제작 정책 만족도×0.7)+(방송광고 법규준수율 상승×0.3) 외주제작 분야 제도 개선·정책 등에 대한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외부기관의 만족도 측정
							방송광고 법규준수율은 직전 3년치 법규준수율 평균보다 0~10% 상승시 80점, 10% 이상 상승할 경우 90점, 0~10% 감소시 70점으로 산정	당해 연도 법규준수율을 직전 3년치 법규준수율 평균으로 나눈 비율	방통위 행정처분자료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외주제작시장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부족한 제작비 조달, 불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관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조성 필요성 증대
- 모바일·인터넷 광고 성장 및 경기 침체로 인해 방송광고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협찬주의 음성적 협찬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찬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
-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논란 및 방송사 시청률 경쟁 심화에 따라 선정·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증가할 가능성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 증대
- 장애인 방송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시청각 장애인들의 방송접근 개선 강화 요구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방송콘텐츠 표절 등 국내외 사업자 간 분쟁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한류방송콘텐츠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환경은 한한령 여파로 악화

□ 갈등요인

- 외주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관련 방송사·외주사·제작인력간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
- 프로그램 제작비 상승 등 제작현실을 고려할 때 협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콘텐츠 제작역량을 악화할 수 있다는 방송 사업자의 반발 우려
-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등 공적 책임 준수를 위해 방송내용 심의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과도한 내용심의 및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방송프로그램 수준 제고에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
- 장애인방송의 확대, 질적 수준 제고, 방송접근 개선을 위한 신규 서비스 도입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의 어려움 및 방송사 지원 요구

□ 갈등관리계획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지상파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물의 인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
- 협찬제도 개선 시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청권을 보호하면서도 협찬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심위의 사후심의와 더불어 심의 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심의 기능 강화 유도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한 제작비 지원 및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 방안 추진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다변화를 통해 중국 등 해외시장 여건 변동에 따른 리스크 축소 및 지속적인 방송한류 견인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성과목표 III -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내용의 선정성, 편파성, 폭력성 등으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여 시청자 권리 증진 및 방송 품격 제고 추진
-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방송수신기(TV) 보급 및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 방송취약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 방송 및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점검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위반사업자 제재 및 사업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 유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19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45.8	57.7	69.7	80	누적보급률 증가에 따른 지표 난이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21년 100% 보급 목표(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10% 이상 상승한 적극적 목표치 설정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수) × 100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통계자료, '19년 시·청각장애인 TV 보급 현황자료

□ 외부환경

- 사회적 이슈 관련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성·공정성 논란 및 방송사 시청률 경쟁 심화에 따라 선정·폭력적인 저품격 프로그램이 증가할 가능성으로 인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강화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 증대
- 시·청각장애인용TV 보급 대상자 선정(소득정보, 장애정보 등)을 위한 관련기관 정보공유 필요

- 방송광고 시장 침체에 따른 매체 간 경쟁 심화로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및 협찬고지 법규 위반 가능성 증대

□ 갈등요인

-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등 공적 책임 준수의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방송내용 심의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과도한 내용심의 및 제재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방송프로그램 수준 제고에 역효과를 유발할 우려
- 장애인방송의 질적 수준 제고, 방송접근 개선을 위한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추가재원 확보의 어려움 및 방송사 지원 요구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반복 위반에 대한 사업자 과태료 부담 가중 및 다양한 형태의 협찬거래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법령해석 차이로 인하여 사업자 불만 발생 우려

□ 갈등관리계획

-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방심위의 사후심의와 더불어 심의 책임자 회의 등을 통해 방송사의 자율심의 기능 강화 유도
- 저소득 시·청각장애인에 방송수신기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 업무협력 강화, 맞춤형 홍보, 신청 편의 제공 등 추진
- 장애인방송 의무사업자의 제작여건 등을 고려한 제작비 지원 및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 방안 추진
- 방송사업자 채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시교육 강화 및 법률전문가·업계전문가·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을 통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III-1-①)

□ 추진배경(목적)

- 오보 및 방송 출연자에 의한 막말 등의 방송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국회·언론 등에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 오보 및 저품격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추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내용 심의·제재) 방송사의 오보·막말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막말, 선정, 폭력 등 저품격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엄정심의
- (우수 프로그램 시상) 건전한 방송문화 조성과 방송 제작인의 사기 진작 및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과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시상
※ 우수 프로그램 공유·확산을 위해 방송대상 수상작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
- (자율심의 기능 강화) 방송심의사례집 제작·배포와 지속적인 심의책임자 회의 개최, 심의사례를 활용한 미디어교육 실시 등을 통해 방송 관계자의 자율심의 능력 강화를 유도
- (고품격 방송언어 환경 조성) 혐오·차별 등 방송언어 실태조사 및 자료집 제작·배포, 방송언어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방송언어특위 운영, 방송언어 순화 등을 위한 캠페인(자막고지, 공익광고 등) 실시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8 방송심의사례집 발간·배포	3월	
	2018 방송언어 조사자료집 발간·배포	3월	
2/4분기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5월	
	방송언어문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상반기)	5월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 서비스 실시	6월	
3/4분기	건전한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공익광고 제작 및 송출	9월	
4/4분기	방송언어문화 자막고지 등 캠페인 실시(하반기)	10월	
	방송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	11월	
	방송통신 심의사례를 활용한 미디어 교육 실시	12월	
	방송심의 관련 규정 개정	12월	
연중	방송내용 사후심의 및 제재처분	연중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매월) 및 '바른방송언어특별상(반기)' 선정	연중	
	방송사 심의 책임자 회의 개최	연중	
	방송언어특별위원회 운영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사업자) 품격 있고 창의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 조성
- (시청자) 막말·선정성 등이 배제된 고품격 방송프로그램을 시청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내용 규제 기관
- (방송사업자) 방송제작 당사자 및 내용규제 대상 기관
-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청소년(시청자) 보호 등 관련 기관

□ 기대효과

- 방송언어 문화 개선, 방송사 자율규제 유도 및 사후심의·제재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향상하고 청소년을 비롯한 시청자의 미디어 복지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②, ④)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316.76 (616.57)	323.62 (651.98)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310)	방송통신 발전기금	316.76
② 방송콘텐츠 경쟁력 확보(3134)	3.30 (76.58)	3.10 (66.61)
▪ 방송분야 시상(301)		3.30
		3.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점)	62.6 63.3 63.5	63.5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치와 전년도 실적치를 감안하여 '19년 목표점수를 63.5점으로 설정 * 3년간 실적 평균치 : 63.1 * '18년도 실적치 : 63.5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 3개 항목 : ①프로그램품질저하 방지기여도 ②규정위반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수준의 적절성 ③방송관련민원처리과정 및 결과 만족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청자, 방송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Ⅲ-1-②)

□ 추진배경(목적)

- 미디어 융합 가속화, 신규 서비스의 등장 등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해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을 향상
- 시·청각장애인 등이 방송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송접근 환경 개선을 통해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이념 구현
 -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기금의용도),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 편성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돋기 위한 맞춤형 장애인용 TV 보급을 통해 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
 -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맞춤형 홍보를 통해 정보소외가 심한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을 중심으로 TV 보급을 확대
-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작비 지원, 제공실적 평가, 의무 사업자 지정·공표 등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제고
- 청각장애인의 TV시청 편의를 위해 수어영상의 크기, 위치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개시
- 방송서비스(채널, 프로그램/VoD 정보 등) 및 수신기 메뉴의 내용을 음성으로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서비스 시범서비스 실시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협약 체결	1월	
	시청각장애인용 TV 제조 업체 입찰공고 및 선정	3~5월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대상 방송사 선정	3월	
	장애인방송 품질 향상을 위한 방송사업자 교육	2~3월	
2/4분기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사업 홍보 및 신청자 접수	5~7월	
	'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 실적 평가	3~7월	
	음성안내 시범서비스 사업자 공모 및 선정	4~6월	
3/4분기	시청각장애인용 TV 보급자 선정 및 보급	7~12월	
	스마트 수어방송 서비스 개시	9월	
4/4분기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 선정	10월	
	시청각장애인용 TV 및 장애인방송 만족도 조사	10~12월	
	음성안내 시범서비스 실시	11~12월	
연중	장애인방송 인식개선 활동 추진	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각 장애인) 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방송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방송에 대한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

○ 이해관계집단

- (방송사업자) 방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방송(폐쇄자막·한국수어·화면해설) 의무편성 시행
- (장애인 유관단체) 시·청각장애인 입장을 대변하고, 국내 장애인 방송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등 수용자 중심의 정책방향 마련에 기여

□ 기대효과

- 시·청각장애인의 방송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권을 보장함으로써 방송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308)	방송통신 발전기금 110.16 (616.57)	116.18 (651.98) 110.16 116.1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75.9	78.1	81.6	82.0	- 최근 4년간('15~'18년) 실적의 평균증가율을 감안하여 적용 - 지상파 4사 및 종편 4사의 시청자 만족도* 평균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2점(최고점 77.2점)인 상황에서 장애인방송 만족도 목표치를 지상파·종편 만족도 보다 높은 82.0점으로 설정한 것은 매우 도전적임 * 2017년 시청자평가지수(KI) 조사 보고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고	(자막방송만족도 × 0.87) + (수어방송만족도 × 0.04) + (화면해설방송만족도 × 0.09)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장애인방송을 시청한 시청각장애인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전화, 대면 등)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Ⅲ-1-③)

□ 추진배경

- 종합유선방송의 점유율 하락과 IPTV 점유율 상승 등에 따라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확보경쟁이 심화되면서 가입자 유치 등 과열경쟁으로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침해 가능성 증대
 -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에서 사업자간 불공정행위 및 시청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통해 건전하고 공정한 환경조성 필요
 - 홈쇼핑사업자-납품업자 간, 플랫폼 사업자-콘텐츠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등을 시정하여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상품에 대한 거짓고지, 중요사항 미고지 등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법 영업행위 근절
 - 방송시장의 경쟁심화에 따라 방송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통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 * 사업자 간 주요 분쟁 사례 : 재송신료, 채널계약, 프로그램 사용료 등
- 매체 간 경쟁 심화에 따른 방송광고 관련 법규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자 계도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규 미숙지 등으로 인한 법규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
 -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방지 및 보호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감독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 판매 및 경품지급에 있어서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 유료방송사업자의 기존 가입자 접수민원 분석을 통해 유형별 주요 이슈를 발굴·공유하고 제도개선 정책 자료로 활용
 - ※ 방통위, 유료방송사, 협회, 재단이 참여하는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운영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와 중소지상파방송사 간 광고판매대행 관련 부당한 계약 조건 강요, 거래조건 차별 등 불공정 거래행위 실태점검
 - ※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사실조사 추진
 -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 거래행위(프로그램 거래, 채널 제공 등) 실태 점검 및 시정조치·개선
 -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19.1.1.)에 따른 이행 점검
 - 방송사업자의 재산상황 공표를 통해 방송시장의 투명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부과기준 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이용자의 정보 활용도 제고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및 위반사업자 제재
 - 매월 전월 방송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시청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연 3회 이상)
- * 시청자 민원이 많은 사항, 법규 위반 빈도가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방송 사업자 및 광고가 집중되는 대형 스포츠 이벤트 등
- 규제 사각지대인 SO 지역 채널에 대한 법규 준수여부 현장 점검 실시(40개 지역채널)
-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관련 자발적인 법규 준수 유도 및 규제 예측성·신뢰성 제고

- 방송사업자 대상 법규설명회 개최, 채널별 맞춤형 수시교육 실시 및 법규 위반사례 공개(미디어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규준수 장려 및 사업자의 규제 예측성 제고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을 강화하여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규제 신뢰성 제고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Kick off	1월	
	방송광고·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1차)	3월	
2/4분기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홈페이지 공개	5월	
	프로그램사용료 지급 관련 사설조사	3~6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중소지상파방송사 금지행위 실태점검	4월	
	홈쇼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4~6월	
	방송광고·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2차)	6월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6월	
3/4분기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차별행위 여부 실태 점검	7~9월	
	방송광고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7~9월	
	홈쇼핑 금지행위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이행점검	7~12월	
	외주제작시장 불공정행위 관련 설문조사	8~9월	
	SO 지역채널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현장점검	9월	
4/4분기	방송광고·협찬고지 주요 위반사례 홈페이지 공개	10월	
	방송광고·협찬고지 집중 모니터링(3차)	11월	
	유료방송사 접수민원 분석 결과 보고	11월	
연중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개최(3회)	연중	
	금지행위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연중	
	방송분야 불공정행위 전문가 자문반 운영	연중	
	유료방송 자율개선 실무협의체 회의(6회)	연중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 모니터링 실시 및 월별 분석보고서 작성	1~12월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교육	수시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 이용자)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실태점검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과다한 방송광고·협찬고지로부터 시청권 침해를 방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 (방송사업자 등) 불공정거래 균절, 분쟁조정 등 사업자간 상생 환경 조성을 통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정부, 학계 및 산업계 등)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를 통해 방송 시장의 회계 투명성 제고 및 방송정책 수립·연구 등에 활용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방송광고 형식규제로 인해 방송사업자의 제작 자율성을 제한하고 방송광고 시장을 축소시킬 우려

□ 기대효과

- 불공정행위 시정,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방송 및 방송광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시청자 권리보호
- 거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통해 중소·영세 사업자의 피해 예방 및 권리보호
- 불공정행위 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방송시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표하여 방송평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등 방송정책 관련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방송시장의 규모 및 거래현황 정보 제공
-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후 제재를 통해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및 방송사업자의 사전적 예방 효과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반구축(311) ▪ 방송시장 불공정행위 조사지원(312) 	방송통신 발전기금 22.17 (616.57) 15.55 6.62	22.69 (651.98) 15.98 6.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18			
방송시장(광고) 불공정행위 개선건수(건)	신규 4		5	○ 불공정행위 개선분야와 향후 불공정행위 예상 분야를 검토하여 방송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 및 유료방송사의 시청자에 대한 부당한 영업활동 등 총 5건을 목표치로 설정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5건)	공문, 사실조사 보고서 등

성과목표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방송사-외주사간 불공정관행 실태조사 및 순수외주제작물 검증 등을 통해 건강한 외주제작 생태계를 조성
 -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발족·운영, 해외 방송시장 조사 등 방송콘텐츠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협찬이 투명하게 거래되고,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찬 제도 개선 추진
 -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과 방송광고 시장의 활성화 유도
- * 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기업, 우수 Green-Biz·녹색인증 중소기업, 글로벌 IP (지식재산) 스타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하여 방송의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 및 정책 자료로 활용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방송기반 구축 이행도(%)		신규	80	한류 확산을 통한 방송산업 발전 기반 구축도를 측정하기 위해 국가간 공동제작 협정 및 국가간 회의개최 건수 등을 설정 ※ 국가간 협상결과에 따라 자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목표치는 80%로 설정	(공동제작 협정 체결 건수×0.4+국가간 국장급 협의체 운영 건수×0.1 + 공동제작국제콘퍼런스 참석 국가×0.03) ×100	공동제작 협정 보도자료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거래 시 부족한 제작비 지급, 불합리한 권리 배분 등 불공정관행 이슈가 부각되면서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 증대
- 최근 매체 간 경쟁심화로 협찬주의 음성적 협찬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협찬거래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
-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외부 경기 악화, 기업 경영상황의 변화 등 외적인 변수의 영향을 많이 받아 비용이 많이 드는 방송광고를 제작 및 방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해외 사업자의 국내 방송콘텐츠 표절 등 국내외 사업자 간 분쟁요인이 증가하고 있고, 한류방송콘텐츠 수출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환경은 한한령 여파로 악화
-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세 가속, IPTV방송사업자의 성장 등 방송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 미디어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따라 매체 이용행태 급변

□ 갈등요인

- 외주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관련 방송사·외주사·제작인력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여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필요
- 프로그램 제작비 상승 등 제작현실을 고려할 때 협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콘텐츠 제작역량을 악화할 수 있다는 방송 사업자의 반발 우려

-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일부 스타트업들을 비롯하여 해당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있으며, 방송광고 제작 후 광고 송출비에 대한 부담으로 방송광고 활용에 한계가 있음
- 일간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에 따른 여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고,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청점유율 제한제도 도입

※ 미디어다양성위원회(방송법 제35조의4) 및 시청점유율 제한(제69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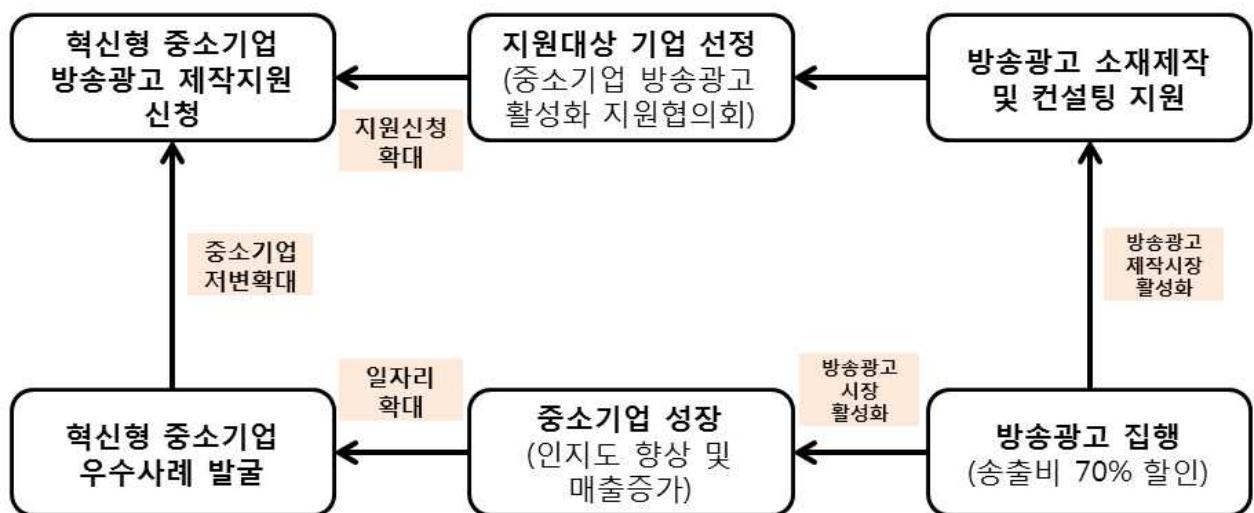
□ 갈등관리계획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지상파방송사의 순수 외주제작물의 인정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외주제작 환경 조성
- 협찬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협찬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협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형식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 한류방송콘텐츠 신시장 개척 및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를 통해 체결 근거가 마련된 국가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을 추진하여 방송콘텐츠 수출장벽을 낮추고, 신남방·신북방·북미 등으로 한류시장을 다변화
- 국내외 방송관계자 간 소통의 장 마련 및 공동제작 관련 교류협력 강화와 국내 방송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송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 방송콘텐츠 관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등을 위해 방통위가 구심점이 되는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발족·운영

- 해외 방송시장 조사를 통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방송 한류 확산의 기반 마련
-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와 관련 많은 중소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확대하고, 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 고정형 TV, PC, 스마트폰의 실시간 및 비실시간(VOD) 시청시간을 측정하여 방송매체 이용행태의 변화를 시청점유율 조사에 반영

(4) 기타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선순환 구조도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Ⅲ-2-①)

□ 추진배경(목적)

□ (국정과제 70-4)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 (주요 내용) 방송사-외주사간 불공정 실태점검을 통한 제도개선과 지상파·유료방송에 대한 중간·가상·간접광고 등 방송광고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불합리한 사후 규제체계 정비

- 외주제작물 의무편성 도입으로 외주제작물 편성 비율이 30%를 상회하는 등 외주제작시장이 확대되었으나,
 - 불충분한 외주제작비 지급, 저작권 등 수익의 자의적 배분 등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불공정관행이 지속되어,
 -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확대 실시, 순수외주제작물 인정기준 심층 검토 등 방송콘텐츠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
- 방송광고시장 악화로 방송사업자의 협찬 의존도가 심화되고, 협찬 받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TV홈쇼핑 판매상품을 방송사 건강정보프로그램에서 소개하는 등 협찬거래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 제기
- 한류 방송콘텐츠는 관련 상품 매출증대, 관광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 중국시장의 위축 및 방송콘텐츠 관련 분쟁요인 증가 등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표준계약서 사용률, 권리 배분 등 방송사-외주사간 외주 계약 실태 및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의 대상 확대·조사 검증 절차 강화
-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편성고시 제9조의2)^{*}에 따라 외주인정지원단의 검토를 거쳐, 외주인정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18년도 지상파4사의 순수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 준수 여부 점검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

- ◆ 표준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방송프로그램으로서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방송프로그램
 - (기존 요건) 외주제작사가 ①작가계약 체결, ②주요 출연자 계약 체결, ③주요 스태프 계약 체결, ④제작재원의 30%이상 조달, ⑤제작비 집행 및 관리 전반을 담당, 중 3가지 이상 만족
 - (선택적 수익배분 요건) ①방송권 수익의 30%이상, ②전송권 수익의 30%이상, ③복제·배포권 수익의 30%이상, ④공연권 수익의 30%이상, ⑤2차적 저작물 작성권 수익의 30%이상 중 3가지 이상을 외주제작사에게 배분

- 방송사-외주사간 합리적인 제작비 산정, 저작권 및 수익배분 등에 관한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외주제작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 「방송법 시행령」 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종편 PP에게 순수외주제작 편성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세부적인 편성비율 고시 개정을 추진하여 외주제작 활성화 촉진
- 협찬이 투명하게 거래되고,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찬 제도개선 추진(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 협찬 정의 조항 신설, 허용범위 및 세부기준 명확화, 일정 금액 이상의 협찬고지 의무화, 협찬 관련 사업자 준수의무 등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확대와 방송협력 강화를 위해 FTA를 통해 근거가 마련된 국가(베트남·태국·중국·캐나다 등)와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협정 체결 추진
 - 공동제작협정(안)의 법적 타당성 및 협정 혜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상국 방송통신부처 간 국장급협의체 구성·운영
 - 협정에 포함할 내용 및 협상전략 마련을 위해 국내 방송사·제작사·유관기관·법조계·학계 의견수렴과 외교부·산업부 등 FTA 및 외교라인의 관계부처 협의 추진
- 국내외 사업자 간 실질적 매칭 기회 제공 및 한류 방송콘텐츠 홍보·판로 기회 확대 등 방송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방송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
-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글로벌 논의체)을 발족·운영하여 국내외 인적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확보·운영하고 창의적 콘텐츠가 세계 각국에 전파되고 재창조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 마련
- 방송한류 진출 대상국의 방송시장·규제·공동제작 현황 및 이용 행태·인식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국내 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지원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한-중국 FTA 서비스투자 3차 후속협상 참가 및 대응	1월	
	한-베트남 방송공동제작협정문(안) 차관회의 상정·의결	2월	
	한-베트남 방송공동제작협정문(안) 국무회의 상정·의결	2월	
	한-베트남 방송공동제작협정문(안) 대통령 재가 완료	2월	
	지상파방송사·외주제작사 MOU 이행점검 실시	3월	
	한-베트남 방송공동제작협정 체결(예정)	3월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2/4분기	방송 해외진출 및 공동제작협정 관련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1차)	4월	
	5개국 방송시장 및 규제현황 현지조사 실시	4~12월	
	방송 해외진출 및 공동제작협정 관련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2차)	5월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발족·운영	5월	
	공동제작 국제콘퍼런스 개최	6월	
	외주제작 인정자문위원회 운영 (1차)	6월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6월	
3/4분기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설정을 위한 편성고시 개정	6월	
	방송 해외진출 및 공동제작협정 관련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3차)	7월	
	한-러시아 FTA 협상 참가 및 대응	7월	
	외주제작시장 거래관행 관련 서면 설문조사 실시	8월	
	5개국 방송이용행태·인식 등 설문조사 실시	8월	
	한-말레이시아 국장급협의체 발족(예정)	8월	
	방송 해외진출 및 공동제작협정 관련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4차)	8월	
4/4분기	한-중국 FTA 서비스투자 4차 후속협상 참가 및 대응(예정)	9월	
	방송콘텐츠 글로벌 워킹그룹 1차 회의	9월	
	방송 해외진출 및 공동제작협정 관련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회의(5차)	10월	
	외주제작시장 거래관행 관련 심층 인터뷰 실시	11월	
	한-태국 국장급협의체 3차 회의(예정)	11월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12월	
	한-캐나다 국장급협의체 2차 회의(예정)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자) 방송내용과 협찬 관련 정보를 혼동하지 않도록 시사·보도프로그램에 대한 협찬을 금지하고, 협찬고지를 의무화하는 등 협찬제도를 개선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시청권을 보호
- (방송사 및 제작사) 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한류콘텐츠 진출 확대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 협찬시장의 투명성 제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협찬 제도 개선이 협찬 시장을 위축시켜, 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기반을 약화할 수 있음
- (외주제작사 및 제작인력)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외주제작 거래 관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강화함으로써 방송콘텐츠 제작환경을 개선하고, 외주제작시장 활성화 촉진

□ 기대효과

-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외주제작 생태계를 조성하고, 외주제작시장의 활성화로 시청자에게 다양한 고품질의 콘텐츠 제공
- 협찬제도 개선을 통해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협찬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한 건전한 제작 재원 마련 가능
-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다변화를 통해 중국 등 해외시장 여건 변동에 따른 리스크 축소 및 지속적인 방송한류 견인

- 공동제작협정 체결 시 공동제작 프로그램의 자국물 인정을 통한 수출 증대, 제작기술과 노하우 공유 및 문화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국제기구 및 정부간 협력 강화 토대 마련, 방송콘텐츠 교류의 선도 국가로 자리매김, 해외 우수 공동제작 발굴(시상) 등 국제 공동제작 인식 제고와 한류확산 실행력 강화
- 글로벌 워킹그룹 내 방송콘텐츠 관련 공통이슈, 공동제작, 상생기반 등의 논의를 통해 방송한류 확산 기반 마련
- 해외 방송시장·규제현황·구매력 등 체감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실제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공동제작협정 협상 및 해외진출 지원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II-1-일반재정⑤)			
① 방송통신운영지원(3135)		12.35 (31.35)	13.30 (33.30)
▪ 방송통신국제협력강화(302)	방송통신 발전기금	12.35	13.30
- 방송공동제작협력강화		5.10	5.35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II-1-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 (616.57)	2.50 (651.98)
▪ 방송시장 상생환경 조성(313)	방송통신 발전기금	-	2.50
- 외주제작 실태조사		-	2.00
- 외주인정자문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			0.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율(%)	-	-	76.45	77	외주제작 제도개선 및 방송공 동제작협력 정책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측정 (외주제작 정책 만족도× 0.5) + (방송공동제작협력 정책 만족도× 0.5) * 만족도는 5점 척도 측정 후 100점 기준 환산	이해관계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외주 2회) (공동제작 1회)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III-2-②)

□ 추진배경(목적)

-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인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방송광고가 인지도 제고에 효과적이나 높은 비용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대기업은 방송광고 외에 모바일·인터넷 광고를 확대함에 따라 방송광고 시장은 점차 축소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침체된 방송광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중 제작 지원을 신청한 기업을 심사하여 TV 42개사, 라디오 30개사 등 총 72개사에 대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컨설팅 제공
 - 방송광고 업무에 대한 인력 및 경험에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방송광고 교육 및 맞춤형 원스톱 컨설팅 제공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연간 기본계획 수립	1월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2월	
	지원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제공	2월~	
2/4분기	추가 지원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6월	
	추가 지원기업 방송광고 제작 및 컨설팅 제공	6월~	
4/4분기	효과평가 계획 수립	11월	
	효과평가 실시	12월~	'20.2월 완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기업 및 제품의 인지도 제고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대
- (광고대행사 및 제작사)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에 따라 광고 제작에 참여하는 대행사 및 제작사의 시장 확대 예상
- (방송사) 기존 광고주 이외에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광고주로 유입되어 광고매출 증가를 통한 재원확보로 양질의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

○ 이해관계자

- (미인증 중소기업) 지원 대상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제한하여 벤처 등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대효과

- 혁신형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지도 제고와 마케팅 능력 강화로 중소기업의 성장에 기여
- 혁신형 중소기업이 새로운 광고주로서 방송광고시장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유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 조성(Ⅱ-1-일반재정④)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3134) ▪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315)	방송통신 발전기금 28.50 (76.58)	23.50 (66.61) 28.50 23.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성과도(점)	신규	3.6	'기업성장 기여도*'는 최근 3개년 실적의 평균치(3.87), '사업만족도'는 신규지표인 점을 고려한 5점 만점의 3분의 2값(3.33)을 목표로 하여 두 값의 평균을 목표(3.6)로 설정 * 인지도와 매출액 상승 기여도 (기업성장 기여도×0.5) +(사업 만족도×0.5)		사업효과평가 조사결과

③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Ⅲ-2-③)

□ 추진배경(목적)

- 방송법 제35조의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제69조의2(시청점유율 제한)에 따라 매년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을 조사·산정·공표하고, 시청점유율 산정결과를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심사에 반영
-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 시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 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 양도 등 제재조치를 명령
- 고정형 TV를 통한 실시간 시청 외, 스마트폰, PC를 통한 시청, VOD(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시청 등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 스마트폰·PC와 VOD(비실시간) 시청이 증가하는 매체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하도록 시청점유율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의 타당성 및 신뢰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우리나라 전체 가구 및 개인의 시청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20,000가구를 대상으로 TV보유·수신환경, 방송콘텐츠 이용현황 등 방문면접조사 실시(매년 6월~10월)
- (시청점유율 조사) '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4,000가구의 고정형TV를 대상으로 실시간 방송채널 시청시간 측정
- ('18년도 시청점유율 산정) '18년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조사 결과, 방송사업자 소유구조 현황 분석(특수관계자, 주식 또는 지분 관계, 일간신문 구독률 환산)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 '17년 주요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 >

방송사	지상파			종편				기타		
	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CJ E&M	YTN	연합
시청점유율(%)	26.890	12.465	8.661	8.886	9.453	6.056	5.215	11.000	2.492	2.187

- (스마트폰·PC 시청행태 조사) 전국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69세 이하 5,000여명(스마트폰 3,500명 이상, PC 1,500명 이상) 패널을 대상으로 스마트폰·PC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행태 조사
- (VOD 시청행태 조사) 고정형TV VOD(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3,000가구, 만 4세 이상 8,800여명을 대상으로 고정형TV VOD(비실시간) 시청행태 조사
- (조사 점검 체계 구축) 패널 관리(패널 추가 영입, 패널 교체 등), 월간 점검회의(측정 기술, 시청기록 점검 등)를 통해 시청기록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신뢰도 및 정확성 제고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9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실시	1월	
	2019년도 고정형 시청기록 조사 용역 사전 공고	2월	
	2019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용역 사전 공고	2월	
	2018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자료 접수	3월	
2/4분기	2019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4월	
	2019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실시	4월	
	2019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실시	6월	
	2018년도 매체교환율 및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도출	6월	
	2019년도 TV·신문 이용행태 조사(1차)	6월	
3/4분기	2018년도 시청점유율 산정결과 발표	7월	
	2018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결과 발표	8월	
4/4분기	2019년도 TV·신문 이용행태 조사(2차)	10월	
	2019년도 시청점유율 기초조사 종료 및 결과 분석	11월	
	2019년도 시청점유율 조사 종료	12월	
	2019년도 N스크린 시청행태 조사 종료	12월	
	2019년도 고정형TV VOD 시청행태 조사 종료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시청자)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증진하여 방송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확대
- (광고주) 스마트폰·PC와 VOD를 통한 방송프로그램 시청현황 파악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광고비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

○ 이해관계자

-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조사·산정 결과에 따라 방송사업 소유 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 일부양도 등의 제한

□ 기대효과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규제를 통해 방송의 여론다양성을 보장하여 미디어 영향력 독과점 방지 및 미디어 다양성 구현
- 스마트폰·PC와 VOD 시청행태 조사를 실시하여 매체이용 행태 변화를 시청점유율에 반영함으로써 여론다양성 보장을 위한 시청점유율 규제의 타당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Ⅱ-2-일반재정②)			
① 미디어 다양성 및 공공성 확보(3132) ▪ 미디어다양성 증진(301)	방송통신 발전기금	49.16 (616.57) 49.16	49.16 (651.98) 49.1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	81	85	87.7	8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 대표성 향상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점유율 패널 대표성 향상을 위해 장래가구추계 대비 저연령(20~30대)층 1인 가구 패널 영입률을 측정 · 최근 3년간 패널영입률 추이* 및 패널모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9년도 저연령(20~30대)층 1인 가구 패널영입률 목표치를 84%로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년 73.1%, '17년 80.5%, '18년 82.5% 달성 - 시청점유율·시청행태조사 개선 사항 이행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점유율 검증연구반 또는 전문가 연구반의 개선 및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이행률*을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도 개선 및 시정권고사항 이행률(9건/13건=69.2%) · 전년치 개선사항 이행률 실적치 등을 고려하여 19년 개선사항 이행률 목표치를 73%로 설정 <p>※ 종합 목표치(=패널 대표성 향상을 *0.6+ 개선사항 이행률*0.4) : 89</p>	<측정방법> (패널 대표성 개선율*0.6) + (N스크린조사 개선사항 이행률*0.4) <측정산식> [(패널 실적치/패널 목표치)×100]×0.6 + [(개선사항이행건수/개선사항도출건수)×100]×0.4	전문 조사기관 및 시청점유율조사 검증연구반/ 전문가연구반

- ▷ 패널대표성 향상을 : 저연령층(20~30대) 1인 가구 패널 모집의 현실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시청점유율 조사패널의 대표성 향상을 위해 저연령층(20~30대) 1인 가구 패널영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
- ▷ 시청점유율 시청행태 조사 개선사항 이행률 : 시청점유율 검증연구용역 및 전문가 연구반을 통해 측정기술 및 측정방식, 패널의 운영관리 등 월평균 1건 정도의 개선요구사항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출된 문제점의 당해연도 개선이행 정도를 측정

전략목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

기본방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하고 방통위 정책추진을 지원
- 2019년 정부업무평가 주요내용인 국정과제, 정부혁신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지원과 행정관리역량 강화 등 각종 시책 추진

◇ 그간의 성과

- **(행정관리)** 기관장 중심의 다양한 행사 개최, 국민 참여와 민관 협업을 통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및 적극적 성과관리 추진
※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등급(행안부 장관 표창)
- **(정보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침해 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정보시스템 보호
- **(정책소통)**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방송통신 정책과 국정과제에 대해 온·오프라인 채널을 아울러 알기 쉽게 전달·확산
※ 2018년 정부업무평가 소통만족도 우수(국조실 발표, '19.1월)
- **(국제협력)** 주요 방송통신 정부기관과의 고위급 면담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내 규제 정책 소개 및 글로벌 방송통신 규제 현안 파악 등 정책 교류를 통한 방송통신 협력 강화 추진
- **(규제개혁)** '18년도에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증제도 통합 등 8건의 규제개선 추진을 통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및 국민편익 증진

◇ 중점 추진내용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과제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으로 국민 소통과 협업의 가치를 실무행정에 구현
- 분쟁 조정에 대한 기능 강화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하여 갈등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갈등의 사전예방에 주력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비상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충무계획 작성 및 보안점검 내실화
-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공직의 신뢰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직가치 및 방송통신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유연근무 등 자기 주도적 근무행태를 활성화
- 방송통신 주요정책 내용을 쉽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기관 신뢰도 제고
- 방송통신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방송통신 국제기구 논의 참여 등 정책 동향 파악 및 공감대 형성, 협력채널 구축 등 국제협력강화 추진

◇ 전략목표와 임무간의 상관성

- 국정기조에 부응하는 방송통신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인재개발, 정보보안, 규제개선, 직장문화, 법제관련 사항 등을 적극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에 기여

<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관리과제 · 성과지표 체계 >

(단위 : 개)

전략목표	전략목표 성과지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2	4	6	1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성과를 극대화 한다.		① 기관혁신 및 소통 만족도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정부혁신 브랜드 과제 이행률 ② 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활동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①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률 ② 혁신과제 이행률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② 비상대비 점검 및 보안점검 달성을률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 규제혁신과제 이행률
	④ 일 잘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① 연가사용률 제고 ② 유연근무실시율 제고 ③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해명·설명자료 관련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②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①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율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②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

전략목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주요내용

□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 실현을 위해 기관 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및 개선을 통해 국민편익증진 및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
- 직원의 전문성과 공직가치 확립 및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여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

□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 방통위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소통 활동을 전개하여 대국민·대언론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 증대
- 방송통신 관련 외국정부, 국제기구와 지속적인 교류·협력 추진 및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8	'19	'20	'21	'22	'23		
기관혁신 및 소통 만족도(점)	-	68	68.5	69	69.5	70	기관혁신 및 소통 만족도는 신규 지표로 주요정책 성과 만족도 조사시 병행하여 만족도 조사 ※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주요 정책 성과 만족도 조사' 결과(68.9)를 참고 목표 설정	7점척도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만족도 조사결과 보고서

(3) 외부환경 · 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일반 국민들이 방송통신 정책을 이해하기 다소 어려운 점이 있어 국민의 실생활과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
- 사이버 공격 수법의 고도화·지능화, 북한을 비롯한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 등 보안위협 증대
- 방통위는 국정과제 2개(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및 일자리 주요정책 1개을 추진중에 있으며,
 - 관련 정책이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제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긴밀한 협조가 필요

□ 갈등요인

- 방송통신 분야 특성상 이해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의견 통일이 어렵고,
 - 이해당사자가 특정인으로 한정되더라도 추구하는 이익의 크기가 정해져 있거나 의견 차이가 커 이해당사자간 조정이 쉽지 않음
- 방송통신 산업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소관 기술변화와 시장 상황을 적기에 관리하지 못할 경우 행정규제가 민간의 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가능
- 방송통신 서비스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화 추세에 따라 정부간 규제협력 및 한류 방송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

□ 갈등관리계획

- 이해당사자가 한정된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 주요 이해당사자별 입장을 파악하고 갈등 발생의 사전 차단에 노력
-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소통 활성화를 통해 법령정비 및 규제개혁의 추진동력 확보
- 정부 간 협력, 국제기구 활동 참여 및 방송통신분야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내 방송사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송사간 MoU 체결 등 교류·협력 지원
- 기관장, 부서장 등이 의지를 가지고 구성원들로부터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기 주도적 근무형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유도
- 다양한 상황에서 공직자로서의 정책판단 기준이 되는 국정철학 등 공직가치 분야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개인별 목표수립 및 이수 여부 지원·관리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1) 주요 내용**□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2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국정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정부 내 시스템을 통해 BH·국무조정실·부처관계자들 간 의견 교환 및 실시간 점검·관리·평가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을 위하여 기관내·외 소통과 협업을 활성화하고 정부혁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정책고객 대표자회의 개최 등을 통한 국민 참여 확대, 불필요한 일 버리기를 통한 업무 간소화 및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 추진

□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수립·시행을 통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훈련 실시로 전시 대비 비상 대비 태세를 구축하고 국가 위기관리 체계 확립

□ 규제개혁 적극 추진

- 방송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기업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창출이 가능한 과제발굴 및 규제정비 추진

- 규제혁신 업무 추진 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의 내실화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규제심사위원회를 강화하여 신설 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및 정비

□ 일 잘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 집중근무시간 운영, 유연근무 등 자기주도적 근무행태 활성화로 일과 생활의 균형 통해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 공직자로서 갖춰야할 공직가치 교육,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송통신분야 전문 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설·운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정부혁신 브랜드과제 이행률(%)		100	100	정부혁신 브랜드과제에 대한 이행 실적 측정('19년 4건) - 방통위 정부혁신의 성과를 대표하는 실국별 대표 브랜드 과제임을 감안하여 이행률 100%로 설정	(이행과제 건수 / 정부혁신 브랜드 과제 건수)×100	정부혁신평가 결과보고서
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활동(건)		신규	7	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신설 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 행정규칙 및 건의과제 등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동 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위원회·회의·행사 개최 실적	내부자료, 규제정보시스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방통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등 2개의 국정과제를 추진중이나 상대적으로 조직규모가 작음

- 또한, 관련 정책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긴밀한 협력 필요

- 악성코드 공격 등 고도화된 해킹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 마련 필요

□ 갈등요인

- 기관내외 소통 활성화 추진 결과, 국민 편익증진과 내부 업무 개선이 이루어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구성원의 업무부담 또한 증가하는 상황임
- 최근 사이버 침해 사례 증가 및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보안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보안·정보보호, 비상대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저조함

□ 갈등관리계획

- 업무 DB를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는 등 일하는 방식 혁신을 통해 구성원들의 업무 부담 경감에 노력
- 외부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충무계획 및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위원회와 산하·유관기관의 관심도 제고
- 장시간 근무 관행, 상사·동료 눈치 보기 등으로 자유로운 연가 사용이나 정시퇴근 등에 어려움이 있어, 일 할 때 제대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쉴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
- 공직관은 공직자로서 지녀야 하는 기본적 항목이나 직무분야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국정과제, 공직가치 등 교육은 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더불어 조직의 체계적 관리·독려가 지속적으로 요구됨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IV-1-①)

□ 추진배경

- 국정과제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혁신과 일하는 방식 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 데 핵심역량을 집중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주관 국정과제 2개*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를 위해 매월 이행 상황 점검회의 개최 및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평가 등 추진

* 표현의 자유와 언론 독립성 신장,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 매월 국정과제 점검 회의(상임위원 주재)를 실시하여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소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수행 추진

- 정부 내 시스템을 통해 BH·국무조정실·부처관계자들 간 의견 교환 및 실시간 점검·관리·평가 등 국정과제 적극 추진

- 정부혁신을 통해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여 낡은 업무관행 제거

-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지원 개방률을 제고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 구현

- 디지털 기술의 활용, 불필요한 행정낭비 줄이기, 선례를 깨는 창의행정을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2019년 정부혁신 실행계획 수립	3월	
	2019년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계획 수립	3월	
2/4분기	2019년 상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4월	
	2019년 상반기 창의역량 교육 실시	5월	
4/4분기	2019년 정부혁신 콘서트 개최	11월	
	2019년 하반기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 개최	11월	
	2019년 하반기 창의역량 교육 실시	11월	
매월	국정과제 점검회의	3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방송통신 사업자 및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노령층, 시청각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 계층
 - 산·학·연 직능별 대표성과 소비자·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한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으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자 편익 제고
- (이해관계자) 방송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 지자체 등
 - 이해당사자가 불특정 다수인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고 당사자별 추구하는 이익의 크기도 커서 의견 조정이 어려워 의견대립이 존재

□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 확산을 통해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을 정착시키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 행정' 구현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	-	100	100	방통위 소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9년 추진계획 수립 시점인 3월부터 매월 이행상황 점검(10회)	국정과제 대상 과제 추진실적 점검회의, 국정과제 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정성평가
혁신과제 이행률(%)	-	-	100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통위 정부혁신 실행계획상 혁신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측정 - 정부혁신과제는 방통위 조직 혁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주요과제임을 감안하여 이행 목표를 95%로 설정 	(이행과제 건수/과제 건수)×100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IV-1-②)

□ 추진배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해킹 및 침해 위협을 제거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
 - 국가 안보 및 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시설에 대한 보안 점검 실시
 - 비상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충무계획 수립과 중점관리대상 업체에 대한 비상 시 동원가능 자원조사 및 국가 위기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을지연습 수행
- * (근거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35조, 통합방위법 제21조,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8조·제10조·제1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5조, 제6조, 보안업무규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통위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 및 보호대책 수립 강화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정보보안 인식 제고
- 방송시설에 대한 내실 있는 보안감사를 통해 보안 취약요인을 사전 발굴 및 차단하여 보안사고를 예방
- 주요 방송사업자와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 역량 향상 및 직원 안전의식 제고
-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한 충무계획 작성·시행 및 실시계획 승인
- 비상대비분야 확인평가 및 중점관리 대상업체(동원지정업체) 자원조사 실시로 비상대비 관련 문제점 개선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동원자원조사 실시	2~3월	
	2019년도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3월	
2/4분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 지침 작성	5월	
	충무집행계획 수립 및 검토·승인	5~11월	
	2019년도 을지훈련 실시	5월	
	2019년도 상반기 보안감사 실시	5~6월	
3/4분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이행 점검	9~10월	
4/4분기	2019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0월	
	비상대비 확인 점검	10~11월	
	2019년도 하반기 보안감사 실시	11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추진실적 및 익년도 계획 보고	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이버 침해사고 대비 및 방송사의 재난 및 전시 대비 태세 강화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이해관계자

- (사이버안전) 정부·공공기관(과기정통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본인확인서비스, 민간아이핀 제공기관)
- (비상대비) 주요 방송사를 포함한 동원지정업체 및 비밀특례기관

□ 기대효과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통한 침해사고 대응능력 강화 및 정보시스템의 사전 취약점 제거를 통한 정보 보호 조치의 효율성 제고
- 현실성 있는 위기상황을 고려한 충무계획 수립, 을지훈련,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등으로 위기 대응능력 향상 및 재난안전 관리체계 확립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계획, 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 및 철저한 이행 점검을 통한 정보보호 수준 강화 및 보안인식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방송통신 운영지원(성과관리 비대상)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 행정사무 정보화(308)	일반회계	6.90 (36.41) 6.90	14.30 (45.60) 14.30
② 방송통신 운영지원(7131) ▪ 방송재난관리(307)	일반회계	13.36 (36.41) 13.36	13.96 (45.60) 13.9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6 '17 '18 '19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75.4	76.7	78.7	79.6	'18년 실적대비 1.1% 향상 된 목표 설정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본인확인기관 : 6개 -위치정보사업자 : 3개	$AL\%)=(T/5)\times 100$ ※ AL:수준율, T: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 (5점 만점)
비상대비 및 보안점검 달성을(%)	100	100	100	100	목표대비 실적지표로 매년 100% 달성을 필요 <'19년도 목표> -자원조사 대상업체수:46개 -보안점검 목표 : 14개	$\{[(자원조사실시업체 / 자원조사대상업체)\times 0.5] + [(보안점검 기관수 / 보안점검 목표 기관수)\times 0.5]\}\times 100$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IV-1-③)

□ 추진배경

- 방송통신 분야의 지속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여 규제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과 창출을 통해 국민·기업의 체감도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자체규제심사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현 정부 출범이후 접수된 건의과제부터 정부 입증책임제도^{*}를 통해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포함한 행정규칙 등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추진

* 기업이 규제 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폐지·완화하도록 체계 전환

- 위원장·상임위원 현장방문·지역간담회, 토론회·공청회,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중심으로 재검토 대상 과제 선정
- 훈령 개정 등 규제정비위원회 개편 절차 단계적으로 정비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기존규제 정비계획 수립	3월	
	자체규제심사위원회 확대·개편 및 규정(훈령) 개정	3월	
2/4분기	확대·개편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상반기)	4월	
	2019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6월	
3/4분기	기존규제 정비 과제 추진상황 점검	8월	
	확대·개편된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개최(하반기)	9월	
4/4분기	규제혁신 아이디어 국민공모 실시	11월	
	규제혁신 실적보고서 제출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방송통신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자) 방송통신 분야 규제혁신을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제고함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 관계부처) 규제혁신과제 추진 과정에서 방송통신사업자 및 관계 부처 간 의견 대립 존재

□ 기대효과

- 기업과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완화·폐지함으로써 경제 활력 제고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규제혁신 과제 이행률(%)	100	100	100	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계획 대비 실적 측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적 과제 발굴 방식을 지양하고 성과·질적 지표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4건) 선정- 문제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규제 혁신 가속화를 위해 '18년도 이행 목표치 92%보다 3%p 상승한 95%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text{이행률(%)} = (\text{규제개혁 이행과제수} / \text{규제개혁 과제수})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행여부 판단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제·개정 사항은 국회 제출까지를 이행으로 판단하고 시행령 이하 법령의 경우 실제 제·개정 여부로 판단- 법령 제·개정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규제 개선 관리카드 상 기재된 개선내용을 보고 이행여부 판단

④ 일 잘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IV-1-④)

□ 추진배경(목적)

- 일·생활 균형을 공무원의 권리로 인식하고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 근무시간 중 업무 집중도를 높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일·생활의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근무혁신 필요
- 다변하는 국내·외 환경에서 정책판단의 기준인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전문역량을 개발하여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를 양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개인별로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균형 잡힌 근무환경 조성
 - 연가 사용이 연중 특정기간에 편중되지 않도록 각 계절별 여행주간과 하계·동계휴가 등을 적극 홍보하고 개인별 연간 연가계획 수립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
 - 부서장 월간 연가사용 현황점검 등을 통해 간부직부터 솔선 수범하여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추진
- 자기 주도적으로 근무시간을 관리하여 조직 내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는 등 업무 생산성 제고
 - 유연근무제도 활용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자율 설계하여 기관·부서 차원의 생산성 제고
 - 유연근무 활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집단유연근무를 실시하여 2시간 이상 조기 퇴근할 수 있도록 유도

- '가족 사랑의 날'을 주2회(수·금) 실시하여 여가생활 및 자기계발 시간을 갖는 등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 올바른 공직가치 확립을 위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 함양, 직무 전문성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이수를 독려하여 인재개발 추진
- 사회적 가치 등 국정과제 교육을 추진하여 바람직한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민생체험·봉사활동 등 을 통한 실천하는 공직자 상 구현
- 방송통신 분야 전문가 초빙 강의 및 온라인 강의 등을 활용하여 방송통신 관련 직무 전문성 제고
-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자기 주도 외국어 교육 실시 및 주제별 외국어 스터디 운영
- 신규·전입 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 기본 소양·역량과 방송통신 업무에 필요한 기초 역량 배양을 위한 교육 실시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전년도 복무관리 종합계획 결과 보고	1월	
	자체 외국어 위탁교육	2월	
	공무원 복무제도 교육	3월	
2/4분기	사회적 가치 교육	3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4월	
	장애인식개선교육	5월	
	독서통신 교육	4~5월	
	복무관리 종합계획 수립	4~5월	
3/4분기	적극행정·소극행정 사례교육	3분기 중	
4/4분기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11월	
	복무제도 만족도 조사	12월	
매 월	부서장 연가이용실적 점검	연중	
매 월	유연근무 실적 집계 및 분석	연중	
수 시	복무점검 등 근무기강 확립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직원) 국정철학·공직가치 및 전문역량 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배양하고 직무 전문지식을 습득, 근무행태 개선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 자기개발과 사기昂양 실현
- (국민) 공무원의 공직역량 개발과 효율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여 대국민 신뢰도와 정책 만족도를 향상

○ 이해관계자

- (행정기관장) 유연근무·연가사용 등 유연한 복무제도 활용 직원의 근무성적평정, 전보,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
- (부서장 및 동료) 연가 및 집단유연근무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 등 필요
- (교육기관)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 과정과 강사가 필요
- (교육기관) 해당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적합한 교육 기관과 능력 있는 강사 필요

□ 기대효과

- 올바른 공직가치·공직자세 확립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방송·통신 분야 공직 인재 양성
- 유연한 근무여건 조성으로 효율적·생산적 근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업무 만족도 제고 및 업무시간 이후의 자기개발 기회 확대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연가사용률 제고(%)	-	-	신규 70 (평균 연가 사용 실적)	전년도 위원회 직원의 평균 연가 사용실적(65.81%) 및 권장연가 일수(15일)를 고려하여 설정 ※ '18년도 중앙부처 평균 연가사용 비율 : 61.9% ※ 객관적 평가 및 비교를 위해 전부처 공통인 '행정관리역량 평가(행안부)' 산식을 활용	위원회 직원의 평균 연가사용 실적%(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1인당 평균 연가부여 일수)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유연근무실시율 제고(%)	-	-	신규 75	'18년 위원회 유연근무 실시비율(69.8%)을 고려하여 75%를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설정 ※ '17년도 중앙부처 평균 유연근무 실시비율 : 66.4%'(18년도 자료 공표 전, 인사처)	위원회 직원 유연근무 실시비율(%)(12일 이상 유연근무를 사용한 인원/위원회 현원)	표준인사시스템 통계 자료
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시간)	신규 14.5 15.6	16		전년도 1인당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15.6시간) 대비 2.6% 증가 추진을 통해, 평균 국정과제 교육 이수시간이 16시간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목표치를 적극 설정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 이하 현원(과장급 포함)	국정과제 교육 이수 실적

(1) 주요 내용**□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 방통위 추진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소통활동을 전개하여 대국민·대언론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신뢰도 증대
 - 주요 정책 내용을 쉽고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확산하여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을 통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추진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 해외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송통신 통상 환경에 대응
 - 고위급 면담, 국제회의 참가 등을 통한 방송통신 교류협력 추진 및 한류 해외진출을 위한 방송통신 네트워크 강화

□ 남북 방송통신 교류 추진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남북간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콘텐츠의 제작을 지원하고 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국제남북 방송통신 컨퍼런스 개최 등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19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6	'17				
해명·설명자료 관련 온라인콘텐츠 제작률(%)	신규	100	오보 및 이슈시안 발생시 배포하는 해명(설명)자료가 원활히 확산될 수 있도록 온라인 콘텐츠로 구성해 제작하는 비율로, 자료 1건 당 1개 이상의 콘텐츠 제작을 목표	온라인콘텐츠 게재건수 / 해명·설명자료 배포건수	방통위 콘텐츠 게재실적	
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건)	신규	3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국제 행사 참여를 통해 해외 최신 동향 파악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에 따라 동지표를 성과지표로 설정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행사 참여 실적	내부자료, 보도자료 등 실적자료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부환경

- 지능정보사회에서 미디어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방송
통신 정책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국민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소통 필요성이 증대
- 국가 간 FTA 확대, 글로벌 서비스의 확산 등 방송통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해외 방송통신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
체계 강화 필요
-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 간 평화분위기가 진전됨에
따라 남북 간의 교류협력사업 확대 필요성 증대

□ 갈등요인

- 규제중심 업무로 일반국민의 주목도가 높지 않고, 정책 내용이
어려워 콘텐츠 기획·확산이 어려운 한계

- 국가간 방송통신 정책이 상이하고 역외 적용 문제 등으로 인해 국가간 협의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 많음
- 방송통신 분야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은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 등 대내·외 환경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음

□ 갈등관리계획

-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을 온라인 홍보콘텐츠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는 생활밀착형 홍보 강화
- 고위급 양자 면담, 국제기구회의 참여 등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 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통해 정부간 정책 협력 강화
-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사업 추진

(4)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IV-2-①)

□ 추진배경(목적)

- 방통위의 정책목표·추진과제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이 정책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소통 기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온라인 정책홍보 강화)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주요정책을 쉽고 짧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게재하여 정책전달의 효과성 제고
- (대언론 소통 활성화) 보도자료 배포, 출입기자 간담회 및 주요 정책 브리핑 등 신속·정확한 보도를 위한 언론 취재지원 강화
- (기관장 홍보활동 강화) 이해관계자 간담회, 방송출연·기고 등 기관장의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한 현장소통 강화
- (직원 소통역량 강화) 보도자료 작성 요령, 효과적인 정책홍보 방안 등 직원 대상 홍보교육 및 바른 공공언어 사용 안내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부서별 홍보실적 평가	2월	
	방통위 업무계획 홍보	3월	
2/4분기	직원 소통교육 실시(상반기)	6월	
3/4분기	범부처 정책기자단 대상 정책설명회	9월	
4/4분기	우수 보도자료 시상	12월	
	직원 소통교육 실시(하반기)	12월	
연중	보도·해명자료 배포 및 브리핑 지원		
	출입기자 간담회 실시		
	온라인홍보 이벤트 개최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모니터링		
	기관 공식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운영		
	주간 홍보계획 관리		
	주요정책 기획홍보		
	위원장 연설문·기고문 작성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전 국민·언론사)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유용한 방송통신 정보를 제공하며, 정책 관련 보도·해명자료 배포 등으로 언론사의 취재활동 지원

○ 이해관계자

- (방송통신사업자·시민단체 등) 방통위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자, 시민단체의 경우 방송통신 정책 발표 등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원활한 소통이 필요

□ 기대효과

- 주요정책의 홍보 콘텐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확산하여 대국민 소통 강화
- 이슈사안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언론사 설명 등 즉각 대응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관 신뢰도 제고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율(%)	신규	87	전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72.9점)를 고려하고, 객관적 성과 측정을 위해 정량수치인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을 지표 산정에 추가 ※ 만족도 조사 : 74점 목표 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 120건 목표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 0.5)+(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건수 /목표)×50]	방통위 SNS 방문자·출입기자단 대상 설문조사 및 방통위 SNS 콘텐츠 게재 실적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IV-2-②)

□ 추진배경(목적)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교류 협력 활동 지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3조(방송통신 국제협력)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2조(남북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 (국가간 협력 기반 강화)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과 정책 동향 파악 및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정부 고위급 면담 등 추진
 - (국제기구 협력 강화) ITU, AIBD 등 방송통신 국제기구의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 채널 구축
- 남북방송통신 교류 활성화 추진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방송통신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의 관심 제고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비정치적인 문화, 역사, 스포츠 분야 등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으로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통일의식 제고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북한의 방송통신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방송통신 정책 수립 및 민간의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19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스페인, 체코 등 주요국과의 방송통신 교류 협력 기반 마련	2월	
	이슬람 국가와의 방송통신 협력 및 한류 확산 방안 논의	3월	
2/4분기	글로벌 방송통신 기술동향 파악 및 방송통신 정책 협력	4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방송통신 정책 교류, 협력 추진	6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방송사 선정	4~6월	
3/4분기	주요 해외국가와의 방송통신 정책 협력 및 교류 강화	7~9월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자료수집 중간 점검	7~9월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중간 점검	7~9월	
4/4분기	남북 방송통신 국제 컨퍼런스 개최	11월	
	통일 방송프로그램 방영	12월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 조사 연구보고서 정리	12월	
	'19년 성과정리 및 '20년 계획 수립	12월	
연중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연4회 개최	분기별 1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 방송통신 사업자 및 학계 등 전문가, 시청자 등

○ 이해관계자

- 국내·외 방송통신 사업자, 해외 방송통신 관련 규제 기관 등

□ 기대효과

- 방송통신 규제 분야 정부 간 정책교류 및 주요 국제기구 논의 참여를 통해 글로벌 정책 동향 파악 및 국내 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국제협력 기반 강화
- 방송통신을 통해 남북간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 제고 및 국제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 하는 한편, 북한 방송통신 현황 등에 기초 자료 제공을 통해 민·관의 남북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8	'19
행복한 방송통신 환경조성(II-1-일반재정⑤)		
① 방송통신 운영지원(3135)	12.35 (31.35)	33.30 (33.30)
▪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302)	12.35	13.30
- 방송통신 국제협력 인프라 강화	방송통신 발전기금	3.05
-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1
-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2.9
- 북한 방송통신 이용실태조사		0
		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9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6	'17	'18	'19	
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75	75	85	국제 사회 환경에 따라 국제협력 업무 추진 변동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보수적으로 설정('18년도와 동일) ※ 국제협력 실적 : 20건 만족도 : 70점	[(방송통신 국제 협력 추진실적/계획)x0.5]x100+ (방송통신국제협력만족도)x0.5
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공통)(점)	신규	84.6	74	75	측정산식 변경 및 남북간 정세상황 변동성을 감안하여 전년도 실적대비 1점 상향

IV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 변화관리 계획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방송정책, 이용자정책, 행정관리 분야별 전문가 13인으로 구성('18.7월)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로 운영하되, 소위원회는 관리과제 분야별로 구성
-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시행계획 등의 심의와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결과 심의
- 성과관리에 관한 절차, 환류 등 성과관리의 전반적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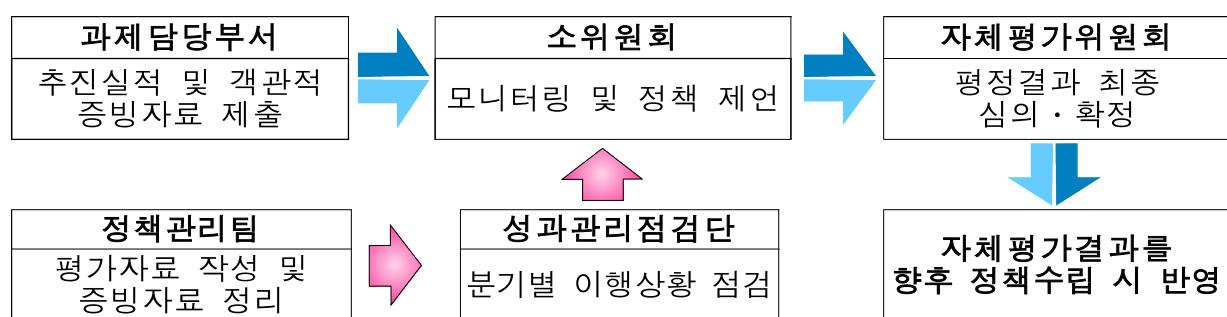
□ 평가지원조직 구성

- 효율적인 평가업무 관리와 체계적인 평가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총괄팀과 자체평가위원회 분과별로 평가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평가지원팀 구성 · 운영
 - 자체평가 기본방향, 분야별 평가계획 등 기획 및 종합 · 조정 업무 수행
 - 반기별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총괄, 평가 분야별 점검결과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작성
 -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및 평가분야 정책에 대한 업무설명회, 현장방문, 간담회 등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 평가(점검)의 시행

- 매년 상반기 세부과제별로 일정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자연이 예상되는 사업은 원인 분석과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
- 연간 추진실적 평가 시, 평가지원팀은 각 소관별 자체평가 계획에서 제시된 분야별 평가지표의 측정기준에 따라 추진 실적 및 증빙자료를 소위원회에 제출
 -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정 후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및 심의·의결
- 자체평가결과 미흡과제는 원인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향후 정책수립 시 반영
 -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 등의 종합적 심층진단도 병행

<자체 평가 실시(점검) 체계>



□ 주요 일정

2019년 2/4분기	→	○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 자체평가 시행계획 수립
2019년 3/4분기	→	○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실시 ○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정
2019년 4/4분기	→	○ 자체평가 정책설명회 실시 ○ 하반기 자체평가 실시
2020년 1/4분기 (1월)	→	○ 최종평가 실시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성과관리의 주요 환류체계

- 성과관리 관리과제별 자체평가(7등급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과제별 개선보완사항은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하지 않으나 성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지양
- 성과관리 자체평가 결과는 부서성과평가 점수에 반영하여 성과 연봉 및 성과상여금 평가 시 활용

□ 정책개선 및 정책품질 제고에 활용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서 평가위원 등이 발굴 또는 제시한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하여 추진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례 등은 각 국에 전파·공유하여 성과관리 제고
 - 평가결과 개선·보완사항은 다음 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반영하고 향후 평가시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행사항 점검·관리
- ※ 전년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여부를 자체평가 시 반영

□ 조직 및 정원관리에 활용

-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전년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수립

- 평가 및 직무분석을 통해 인력조정·재배치, 부서기능 재조정 등 탄력적인 조직 운영
 - 특히, 미흡과제에 대해서는 인력(업무량)·조직(구조) 차원에서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여 조직운영에 활용

□ 예산편성에 활용

- 관리과제 평가결과는 차년도 예산 편성시 소관 부서의 재정 사업에 반영하여 자체평가와 재정사업 간의 인센티브·패널티 체계 운영
 - 관리과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에 대하여 증액, '미흡' 평가를 받은 부서의 재정사업은 감액 추진

□ 승진·전보 등 인사운영에 활용

- 복수직 4급 이상 개인성과평가 결과, 5급 이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인사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승진·인사 심사 및 전보·파견 등 보직관리에 활용
- 업무실적이 탁월한 우수인력은 주요보직 전보 및 부외파견 시 해당직원의 희망사항을 우선 배려
- 국내외 장·단기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시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우선 배려

□ 성과급 지급

- 성과관리과제별 자체평가 결과를 개인성과에 반영하는 등 통합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 4급 이상 :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기준으로 연초에 체결한 '성과 계약과제'에 대한 목표달성을(업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부서성과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 5급 이하 : 근무성적평가, 부서성과평가,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성과연봉(5급) 및 성과상여금(6급 이하) 지급등급 결정

※ 부서성과평가에 자체평가결과와 국정과제 등 특정과제 수행실적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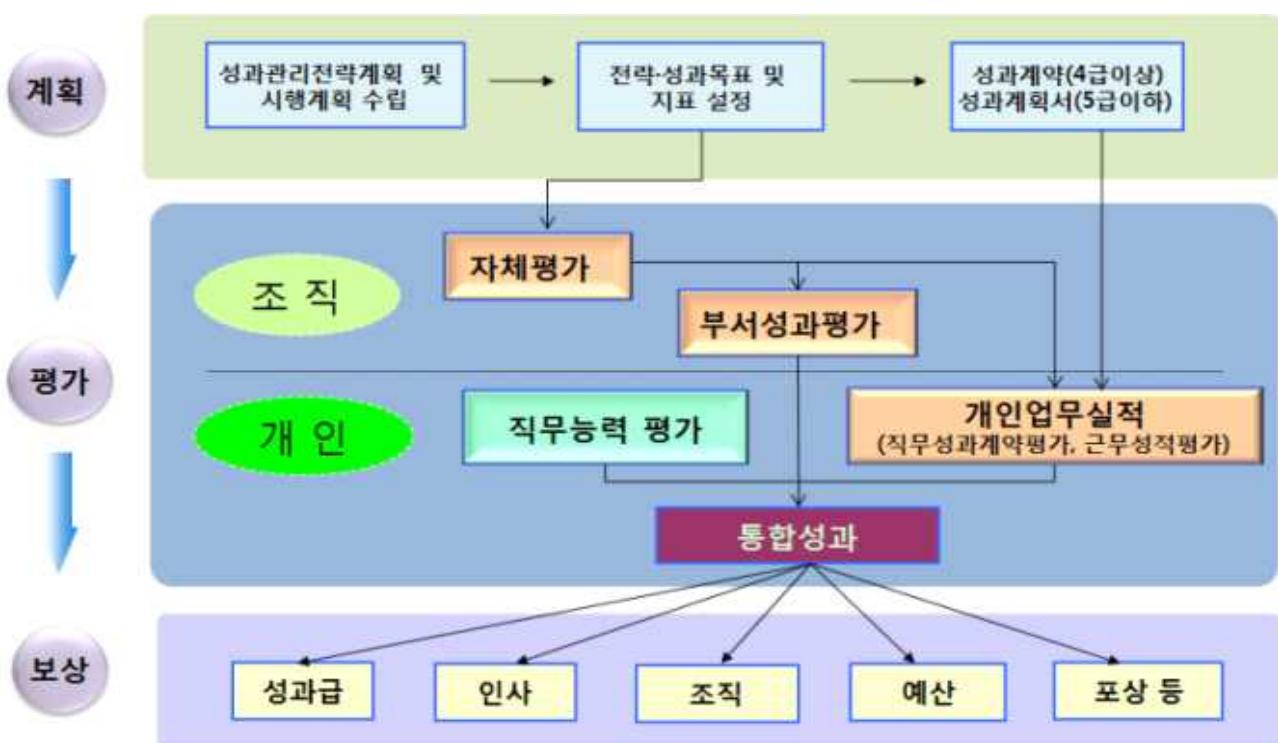
<성과급 지급 등급결정 평가항목>

구 분	대 상	등급결정 기준
성과연봉	4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성과계약(50%), 부서성과평가(40%)*, 직무수행능력평가(10%) * 자체평가(80%) + 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임
성과연봉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실적평가(60%), 부서성과평가(40%)*, 성과급심사위원회평가(10%) * 자체평가(80%) + 행정관리평가(20%) → 자체평가의 개인평가 반영비율은 32% 수준임
성과상여금	6급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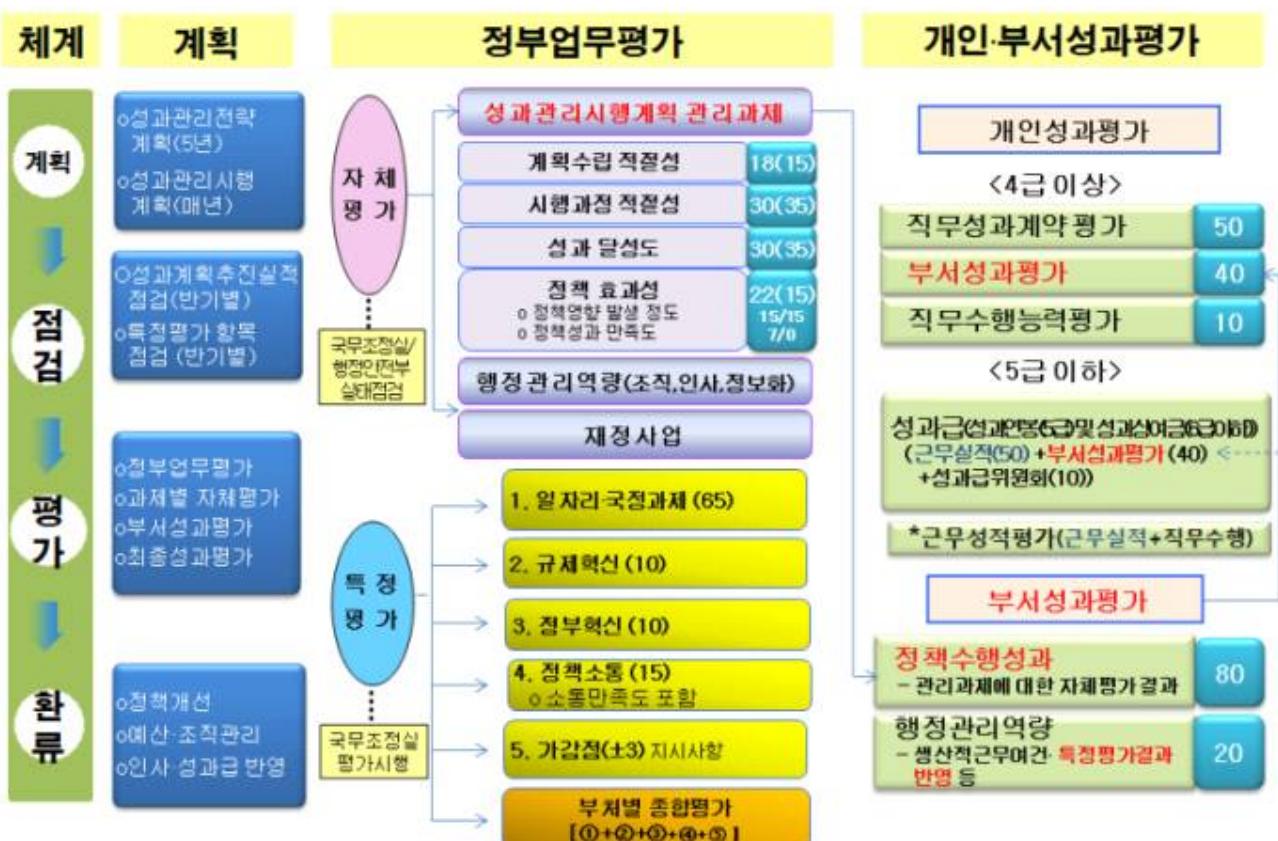
□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과제 포상(금) 지급

- 201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적극적인 과제수행 동기 부여
- 포상대상 : 자체평가 결과 1등급 ~ 3등급 과제
- 포상규모 : 1등급 80만원, 2등급 50만원, 3등급 30만원

< 평가결과 환류체계도 >



< 방통위 세부 평가체계 >



3. 변화관리 계획

3-1. 업무프로세스 개선

□ 집중근무시간 운영

- 위원회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하루 중 업무효율이 가장 높은 시간을 핵심근무시간(Core Time)으로 정하여, 그 시간에는 업무에 몰입
-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금지하고, 회의, 대면결재 대기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 자제
-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퇴근 직전 업무지시, 업무회의 개최 등을 지양하고, 퇴근 후 업무연락(전화, 문자, 단체카톡 등)도 자제
- 주어진 업무시간 안에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업무지시는 가능한 오전에 실시하고, 바로톡을 통해 업무시간 내에서 단체대화 활용

□ 근무시간 자율설계

- 개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여 기관·부서 차원의 생산성 제고
- 자기개발, 자녀 돌봄 등으로 근무시간 선택제 등을 희망하는 직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신청방법 안내
- 필요에 따라 점심시간(12~13시) 앞 또는 뒤 1시간을 자율적으로 붙여 사용하는 점심시간 연계 유연근무제 적극 활용
- 부서장은 부서원의 유연근무를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적극적으로 허가하고, 유연근무자의 승진 및 근무평가 등에 불이익 금지

3-2. 조직문화 개선

□ '가족 사랑의 날' 확대

- '가족 사랑의 날'을 주2회로 확대하여 자기계발 및 여가생활 충족을 통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 매주 수요일·금요일을 '가족 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정시퇴근 유도
 - '가족 사랑의 날'은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국회, 예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정시퇴근 유도를 위해 구내방송으로 '가족 사랑의 날'을 공지하고 부서별로 순회하여 정시퇴근 독려

□ 기관·부서 단위의 집단 유연근무제 활용

- 업무특성 등을 고려한 기관전체·부서별 집단 유연근무제를 활성화
 -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선정하고 기관전체 집단 유연근무제를 시행하여 2시간 조기퇴근
 - 문화행사, 워크숍 등 국 단위 행사시 집단유연근무제 사용 권장
 - 유연근무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마련

□ 연가사용계획 수립

- 개인별 부여된 연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공직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

- '19년 권장연가 일수(15일)를 반영하여 개인별 연간 연가사용 계획을 수립하고 부서장은 특정시기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 계획을 조정
- 간부직 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과·팀장 이상 부서장은 매월 연가사용계획 수립·실시

□ 권장연가제 및 연가저축제 운영

-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당해 최소 사용해야 할 연가일수를 공지하고 권장연가일수를 제외한 잔여 연가 중 일부를 저축
- 권장연가일수 대비 미사용 연가일수는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에 제외
- 연가사용 활성화 차원에서 연가보상 작업시 1~2일을 저축연가로 전환

3-3. 직원교육 강화

□ 다양한 시책교육을 통한 주요 국정과제 공유·확산

- 국정철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외부강사 초빙 교육 및 자체 직장교육 실시
- 연간 교육훈련 시간의 30% 이상을 공직가치, 국정철학과 연계한 부처지정학습 이수를 의무화
- 공직가치 내재화를 위해 사이버 교육을 통한 반부패, 청렴교육 이수를 독려

□ 공통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외국어 청취과정 및 전화외국어 과정을 운영

-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 직원의 연중 다양한 청렴 활동에 대해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방안을 마련

□ 성과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관리 강화

- 제도 정착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
- 직원이 조직목표와 연계한 자기개발계획서 수립 시 개인의 부족역량을 제시하고 조직목표 달성에 필요한 과정을 추천하는 코칭 실시

3-4. 효율적 예산집행 등을 통한 방송통신정책 추진 지원

- 예산집행심의회를 구성·개최하여 집행과정상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예산 조기집행 달성을 위한 점검 추진
-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모절차 도입을 통해 사업자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예산집행 및 정책의 품질 제고
- 방통위 예산 및 기금 사업관리지침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사업수행계획서 양식, 부속서류 등을 일원화하여 불필요한 서류요청 관행 개선

3-5. 성과지표 관리방법 개선

□ 성과지표 관리방법

- '16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성과관리과제 성과지표 대표성 연구 결과로 도출된 과제별 예비성과지표 발굴 및 관리(지표 POOL)

- 방통위 성과목표 과제별 성과지표 관리를 통해 '19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과제의 성과지표 선정에 참고자료로 활용
- 성과관리 수준제고를 위해 각 국 총괄담당 등으로 성과관리 T/F를 구성·운영
- 성과관리과제 및 성과지표 설정을 위한 회의, 워크숍 등 개최 추진
- 성과관리 제도개선 및 위원회 내 성과주의 확산방안 마련을 위한 타 부처 우수사례 벤치마킹 실시
- 사후규제 업무 위주인 방통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정책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
- 정책토론, 공청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업무 유형별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 진행
- 자체평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성과지표 선정,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반영하여 성과지표의 합리성 확보

□ 성과지표의 정책대표성 제고

- 전략목표 수준의 기관대표 성과지표를 발굴하여 총체적인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
- 성과지표는 성과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가급적 구체적인 양적수치로 측정 가능한 정량지표(계량지표)를 사용
- 성과지표의 구체성·명확성이 떨어지는 복합지표는 과제를 대표 할 수 있는 단일지표로 개발 노력

□ 성과지표의 변별력 강화

- 성과지표 목표수준을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평가 시 과제 간 변별력을 확보하고 정책개선 효과증진 노력
 - 목표치의 적극성을 고려한 성과지표별 가중치를 반영하여 도전적인 성과지표 설정을 유도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정책대상별 유형별 의견수렴 절차 강화

- 현장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자체평가 평가지표 중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반영 노력도' 점수를 높게 부여(15점)
 - 정책추진단계별(수립-집행-환류)로 이해관계자, 정책고객 및 국민 등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설명회, 공청회 등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와 동의를 얻고자 하는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정부 운영에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혁신활동 노력도를 평가에 반영

*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시민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 개선, 참여기회 확보, 참여수준 심화 등

**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가치

< '19년도 관리대상 과제 및 의견수렴 방법>

- 대상과제 : '19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 26개
- 의견수렴 방법 : 과제별 특성에 따라 국민, 정책고객집단,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정책토론·이슈토론·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렴
- 전담부서 : 과제담당부서
- 관리체계 : 과제별 의견수렴 결과 및 정책반영도를 자체평가 시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관리

□ 방송통신정책과정에 국민참여제도 도입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숙의제 도입
 - 영향력이 큰 주요방송통신정책을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토론 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절차 마련
- 주요정책의 수립·집행·환류 전 단계에 걸쳐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하여 정책을 재설계하는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혁신기획 담당관)를 지정하여 과제 발굴 및 관리

□ 정책참여 활성화

- 성과관리시행계획 관리과제별 현장의견수렴 외 ‘방통위 홈페이지’를 활용(온라인, 모바일)하여 방통위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의견 청취
 - 주요 국정과제 및 정책, 국민 관심이슈 등에 대해 의견제시, 찬반토론, 설문조사, 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 안전관리 담당자(행정법무담당관 제안담당)를 지정하여 등록안건, 안건 검토, 진행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
- 각 부서별로 국민제안 안건 발굴 및 참여 실적을 ‘행정관리 역량평가’에 반영하여 활성화 유도

<국민제안 의견수렴 방법>

구 분	주요내용	진행방식
전자공청회	입법안, 입법예고 등 정형화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자유토론
대화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을 활용한 정부 주요정책, 국민생활 밀접 과제 등에 대한 자유로운 형식의 의견수렴	자유토론
투표·설문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온라인 찬반 투표 및 설문조사 실시	투표 및 설문조사
아이디어 공모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정책 반영 및 우수제안 포상	공모

□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운영

- 방송통신 주요정책 관련 정책고객 대표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 산·학·연 직능별 대표성과 소비자·노인·장애인 등 분야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선정
- ※ 학계, 법조계, 연구계, 소비자, 시청자, 여성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22명)
- 연 2회(상·하반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추가로 개최하며, 방송통신 현안관련 국별 주요정책 설명 및 의견수렴 방식으로 진행

[불 임]

1. 성과지표 현황
2.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불임1-1

성과지표 현황

1. 총괄현황

(단위: 개)

구분	소계	성과지표				정량지표	
		지표성격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전략목표	4	4	0 (%)	0 (%)	2 (50%)	2 (50%)	4 (100%)
성과목표	8	10	0 (%)	0 (%)	10 (100%)	0 (%)	10 (100%)
관리과제	26	37	0 (%)	1 (2.7%)	20 (54.1%)	13 (35.1%)	37 (100%)

2. 전략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전략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1.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①방송의 독립성 신장 및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추진율(%)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 추진율 목표 달성도 × 0.2 + 지역·중소방송사 자체제작비용 투자비율 목표 달성도 × 0.4 + 찾아가는 미디어나눔버스 운영횟수 목표 달성도 × 0.4	100	정량	산출	
2.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①이용자 권리강화 추진율(%)	(이동통신분야 피해구제 기준 차율점검 체크리스트 마련 및 차율점검 실시×0.25)+(통신서비스 이용정보 제공 확대율×0.3)+(허위조작정보 차율규제 기반 조성 추진율×0.2)+(이용자교육 인원확대(1.5%) × 0.25)	100	정량	산출	
3.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①미디어시장 상생 발전율(%)	(외주제작 정책만족도×0.7)+(방송광고 법규준수율 상승×0.3)	81	정량	결과	
4.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 성과를 극대화 한다.	①기관혁신 및 소통 만족도(점)	7점척도 조사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	68	정량	결과	

3.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목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I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한다.	①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율(%)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개선 추진율 목표 달성도 × 0.5) + (재난방송 음영지역 기술지원 터널수 목표 달성도 × 0.5)	100	정량	산출	
I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률(%)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 건수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수) × 0.5]]	85	정량	산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II -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통신시장 불공정 행위 개선 건수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 실적	8	정량	산출	
II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위반 사항 시정조치 건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위반사항의 시정조치 건수	75	정량	산출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시·청각장애인 TV 저소득층 누적 보급률(%)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누적 보급대수 / 저소득층 시·청각장애인 수) × 100	80	정량	산출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기반 구축 이행도(%)	(공동제작 협정 체결 건수×0.4+국가간 국장급 협의체 운영 건수×0.1+공동제작국제콘퍼런스 참석국가×0.03) ×100	80	정량	산출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정부혁신 브랜드 과제 이행률(%)	(이행과제 건수/정부혁신 브랜드 과제 건수)×100	100	정량	산출	
	②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활동(건)	규제심사위원회 등 규제 관련 위원회·회의·행사 개최 실적	7	정량	산출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해명·설명자료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률(%)	온라인콘텐츠 게재건수/ 해명·설명자료 배포건수	100	정량	산출	
	②국제 컨퍼런스·회의 등 국제행사 활동 건수(건)	국제 컨퍼런스 및 회의 등 국제 행사 참여 실적	3	정량	산출	

4.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I-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한다.												
	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①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율(%)	① + ② + ③ ① 공영방송 지배구조 제도 개선 추진율(30%) (국회 등에 관련 방송관계 법령 개정방향 상임위원회 설명 3회 × 0.1 + 법률 자문 2회 × 0.05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회 × 0.05 + 방송관계법 개정 × 0.1) ②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 개선 추진율(30%) (법률·회계 자문 2회 × 0.05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회 × 0.05 + 방송법 개정안 의원발의 지원 × 0.1 + 방송법 시행령 개정 × 0.1) ③ 중장기 규제체계 정비 추진율(40%)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 3회 × 0.2 + 제도개선 방안 마련 × 0.2)	90	정량	산출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 교육 강화	①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전국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 합계	58	정량	산출						
		② 부산·광주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수(만명)	부산센터 이용자 수, 광주센터 이용자 수	22	정량	산출						
		③ 시청자미디어센터 이용자 만족도(점)	5점 리커트 척도 (100점 만점 환산)	92	정량	결과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① 지역방송발전지원 계획 이행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 10대 정책과제 이행률(%)	74	정량	산출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① 방송재난 대비 중요 방송시설 안전 점검률(%)	'19년도 안전점검 시설수 / [안전점검 대상 총 시설수 (104개소)] × 100	82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①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제고율(%)	[재허가 세부계획 마련 × 0.2]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이행 건수 / 지상파 재허가 조건 수) × 0.5] +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관련 지상파 재허가 심사 여부 / '19년도 재허가 대상 방송사 수) × 0.3]	92.5	정량	산출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①종편·보도PP의 공적 책무 제고율 (%)	[(재승인 세부계획 마련 ×0.2)+(방송의 공적책임 등 관련 종편PP 재승인 조건 이행비율×0.5)+(제도개선안 마련×0.3)]×100	92.5	정량	산출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I -1.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및 권익증진에 기여한다.							
	①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익강화	①통신분쟁조정 제도 운영률(%)	분쟁조정 운영기준 마련 ×30%+분쟁조정위원회 구성×20%+분쟁조정위원회 회의개최(6회)×20%+활성화 홍보 활동×30%	100	정량	산출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①유선시장 정부 가이드 준수율(%)	[(경품가이드 준수율+허위·과장 광고 가이드준수율)/2]* 100	84.8	정량	산출	
	③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①단말기유통법 온라인 준수율(%)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준수 건수/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온라인 모니터링 총 건수)×100	80	정량	산출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 강화 및 보호 기반 조성	①통신서비스 피해 예방교육 역량 향상률(%)	[(계층별 교육후 역량 점수 - 교육전 역량 점수)/교육전 역량점수] × 100	16	정량	결과	
		②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만족도 (점)	Σ기간통신사업자 만족도 점수/기간통신사업자 수 ≥80	80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II-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 (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① 개인 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유지 사업자 수(건)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사후 대상 인증 유지 사업자 수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대상 인증 개선 사업자 수 + 신규 인증 발급 사업자 수	62	정량	산출	
	②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만족도(점)	(신규 B/M 발굴 사업화 지원 수혜자 만족도 ×0.5)+(오프라인 컨설팅 수혜자 만족도×0.5)				
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①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탐지(정탐) 자체율 (%)	((정탐건수/개인정보 탐지 총건수)×0.5) + ((삭제건수/개인정보 청탁 총건수)×0.5)	55.8	정량	산출	
③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구축	① 인터넷 윤리교육 만족도(점)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100점 만점)	87.5	정량	결과	
④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② 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 불법정보 기술적 조치 개선율(%)	상시접속 등을 통한 기술적 조치 개선(차단) 건수/[목표]×0.5]×100+[불법음란 정보 특정값(해시, DNA) 방지위 제거건수/[목표]×0.5]×100	90	정량	산출	
	① 휴대전화·이메일 스팸수신량(통)	휴대전화·이메일 이용자 각각 1,500명 대상 1인 월 평균 수신량 측정	17	정량	산출	
	② 임시조치 개선 등 입법지원 추진율 (%)	임시조치 제도 개선 국회 심의 대응 횟수/[목표]×0.5]×100 + 임시조치 제도 개선 등 관련 의견수렴 횟수/[목표]×0.5]×100	95	정량	과정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III-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도(점)	[(방송심의활동 효과 만족도 3개 항목 각 7점척도 평균 점수)/7]×100	63.5	정량	결과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확대	① 장애인방송 이용자 만족도(점)	(자막 방송 만족도 ×0.87)+(수어방송만족도 ×0.04)+(화면해설방송만족도×0.09)	82	정량	결과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① 방송시장(광고)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건)	실태점검 및 시정조치 등을 통한 불공정행위 개선 건수(5건)	5	정량	산출	

III-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① 콘텐츠 제작 활성화 기반 조성률(%)	(외주제작 정책 만족도×0.5) + (방송공동제작협력 정책만족도×0.5)	77	정량	결과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①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지원 성과도(점)	기업성장 기여도×0.5)+(사업 만족도×0.5)	3.6	정량	결과	
	③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① 시청점유율 조사 신뢰성 개선도(점)	(폐널 대표성 개선율 *0.6) + (N스크린조사 개선사항 이행률*0.4)	89	정량	결과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 한다.

IV-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①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률(%)	국정과제 대상 과제 추진 실적 점검회의, 국정과제 시스템 운영 및 개선실적을 정성평가	100	정량	산출	
		② 혁신과제 이행률(%)	(이행과제 건수/과제 건수)×100	95	정량	산출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 대비 관리체계 강화	① 주요정보통신기반 시설 정보보호 수준율(%)	AL%=(T/5)×100 ※ AL:수준율, T:전체 기관의 수준평가 점수 평균(5점 만점)	79.6	정량	산출	
		② 비상대비 점검 및 보안점검 달성을(%)	{[(자원조사실시업체/자원조사대상업체)×0.5]+[(보안점검 기관수/보안점검 목표 기관수)×0.5]}×100	100	정량	산출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① 규제혁신 과제 이행률(%)	이행률(%) = (규제개혁 이행과제수 / 규제개혁 과제수) X 100	95	정량	산출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9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④ 일 잘할 수 있는 공직 환경 조성		①연가사용률 제고(%)	위원회 직원의 평균 연가 사용 실적(%) (1인당 평균 연가사용 일수/1인당 평균 연가 부여일수)	70	정량	산출	
		②유연근무실시율 제고(%)	위원회 직원 유연근무 실시비율(%) (12일 이상 유연근무를 사용한 인원/위원회 현원)	75	정량	산출	
		③국정과제 교육 활성화(시간)	총 교육 이수시간 합계 / 4급 이하 현원 (과장급 포함)	16	정량	산출	

IV-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 소통 강화	①대국민 정책소통 활성화율(%)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만족도× 0.5)+(국민참여 콘텐츠 실적 건수/목표)×50]	87	정량	결과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①방송통신 국제협력 향상도(%)	[(방송통신 국제협력 추진 실적/계획) ×0.5]x100+ (방송통신국제협력만족도)×0.5	85	정량	결과	
		②남북방송통신 교류 정책 만족도(점)	남북 방송통신 교류 분야 정책 만족도	75	정량	결과	

불임1-2**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I.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신장하고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한다.		
1. 방송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증진한다.		
	① 방송의 독립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국정 4-1)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방송의 역할 재정립(업무 1-1)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업무 1-2)
	② 전 국민 대상 미디어교육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국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 증진(업무 2-1)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업무 2-2)
	③ 지역방송 및 중소방송 활성화	지역방송활성화로 균형발전의 디딤돌 역할 실현(국정 70-2)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업무 1-3)
	④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관리체계 강화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복지 구현 (국정 70-1)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업무 1-3)
2. 재허가·재승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제고한다.		
	①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국정 4-1)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업무 1-2)
	② 종편·보도채널의 공적 책무 강화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국정 4-1) 방송 제작·편성 자율성 확보 및 해직자 명예 회복(국정 4-2)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제고(업무 1-2)
II. 방송통신 이용자의 주권을 강화한다.		
1.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권리증진에 기여한다.		
	① 상생의 통신 생태계 조성 및 이용자 보호와 권리강화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업무 2-4)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②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국정 31-6)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업무 3-1)
	③ 이동통신단말기 유통의 불공정행위 개선	통신시장 투명성 확대를 통한 이용자 후생 증진 (국정 31-6)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업무 3-1)
	④ 통신서비스 이용자 역량강화 및 보호기반 조성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 (업무 2-4)
2.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를 조성한다.		
	① 온라인상 안전한 개인(위치)정보 보호 및 활용지원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업무 3-2)
	②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ICT 성장에 따른 이용자 보호대책 강화 (국정 33-9)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업무 3-2)
	③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구축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국정 70-5)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업무 5-2) 청소년 보호 및 인터넷 윤리교육 강화 (업무 5-3)
	④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인터넷 표현의 자유 증진 및 제도 개선 (국정 4-3)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국정 70-5)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 (업무 4-4)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업무 5-1)
III. 방송시장의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 복지를 제고한다.		
1. 방송시장 환경을 개선하여 시청자 복지를 제고한다.		
	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향상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업무 1-3)
	②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확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복지 구현 (국정 70-1)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업무 2-3)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목표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③ 방송시장 공정경쟁환경 조성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국정 70-4) 방송통신분야 상생환경 조성 (업무 3-1) 방송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제고 (업무 3-3)
2. 방송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① 방송콘텐츠 경쟁력 기반 확충	미디어 상생환경 조성 및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국정 70-4) 제작재원 확충을 위한 방송광고제도 개선(업무 4-1)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업무 4-2)
	②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업무 1-3)
	③ 시청점유율 조사 타당성 제고	경쟁 활성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 (업무 4-4)
IV. 기관 효율성 제고 및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성과를 극대화한다.		
1. 신뢰받는 방송통신 행정을 구현한다.		
	① 원활한 정책 수행 및 정부혁신 선도	
	② 사이버안전 및 비상대비 관리체계 강화	
	③ 규제혁신 지속적 추진	
	④ 일 잘할 수 있는 공직환경 조성	
2. 대내외 협력을 강화하여 기관 신뢰도를 제고한다.		
	① 대국민·대언론 정책소통 강화	
	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방송의 사회적 책임 제고(업무 1-3)